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

### - 경기 남부 -

대상지역 :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과천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경기 남부>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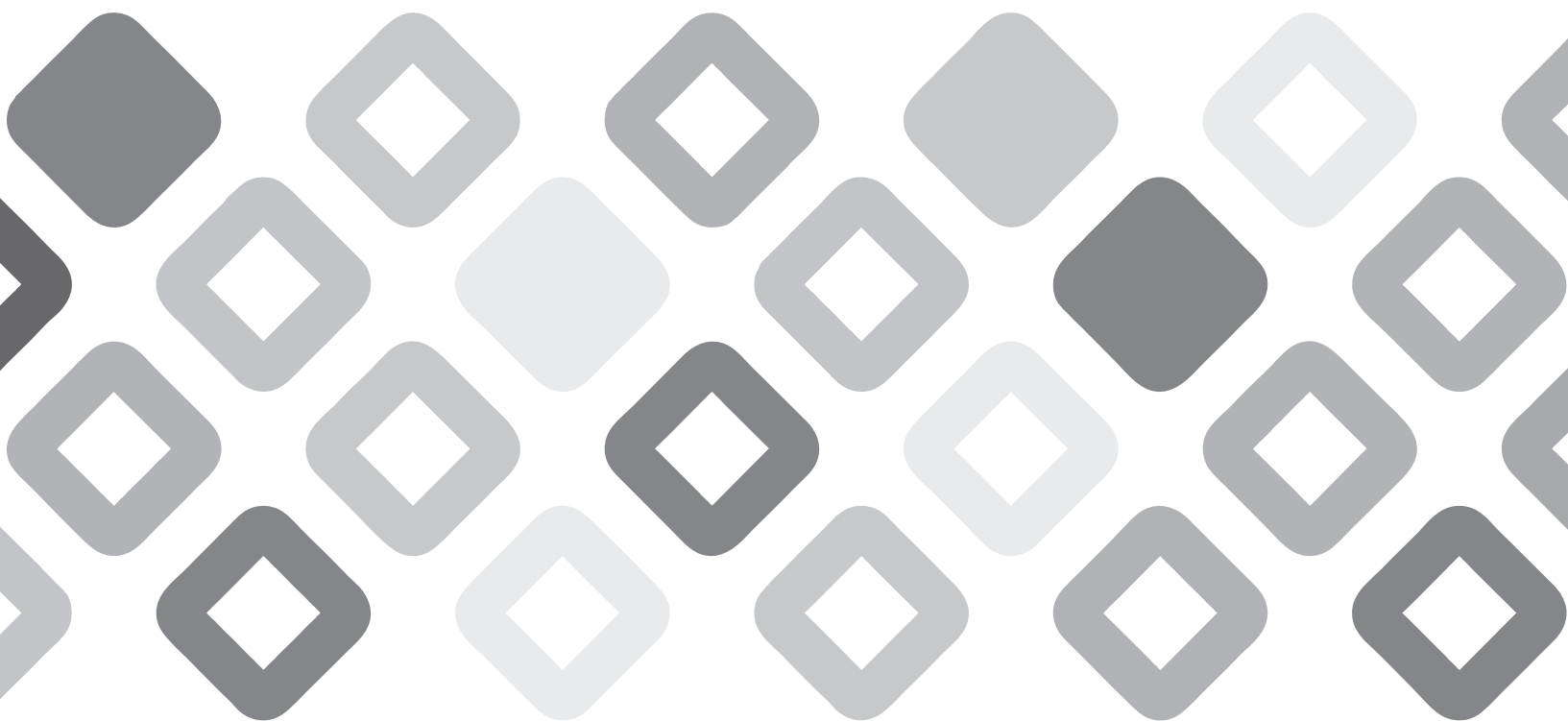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1. 강원구 (전략그룹 나무 책임 컨설턴트)	1
2. 김재민 (경기일보 부국장)	19
3. 박승하 (진보당 경기도당 부사무처장)	35
4. 유병욱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	41
5. 이준호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	51
6.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59
7. 전애리 (경기프론티어문화예술단 회장)	77
8. 조윤민 (정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83





**강 원 구**

**전략그룹 나무 책임 컨설턴트**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지역 선거구획정안 의견

강원구 | 전략그룹 나무 책임컨설턴트

## 1. 서론

### 가.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 인구기준일(제25조제1항제1호) : 2023. 1. 31.
- 지역선거구수(제21조제1항) : 253개
- 인구범위(제25조제1항제2호, 인구비례 2:1)

하한인구수 : 135,521명 / 상한인구수 : 271,042명

### 나. 경기도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시·도	정수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수		
		인구범위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상한 초과	하한 미달	
경 기 도	59	12	2	-

#### <인구범위 상한 초과 선거구 현황>

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고양시을, 고양시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파주시갑, 화성시을, 화성시병

#### <인구범위 하한 미달 선거구 현황>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다. 2008년 선거부터 경기도 국회의원 수와 인구 상관관계 비교

	선거연도	의석수	전년도 1월말 인구	증감
제18대 총선	2008년	52석	10,926,674명	
제19대 총선	2012년	52석	11,801,232명	+874,558명
제20대 총선	2016년	60석	12,366,711명	+565,479명
제21대 총선	2020년	59석	13,090,648명	+723,937명
제22대 총선	2024년	?	13,596,091명	+505,443명

- 제21대 총선(2020년)의 경우 인구는 723,937명이 늘었음에도 오히려 의석수는 1석이 주는 정무적 결정이 있었다.
- 제22대 총선은 또 다시 505,443명이 증가하였고, 상한 초과 지역이 12개가 발생하는 등 순증 요인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2. 의견 제시 원칙

- 가. 경기도의 경우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선거구 증가는 여러 정치적 고려로 억눌려져 있는 상황이며, 이번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고려를 위해 선거구 수가 순증되는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나. 선거구 변동이 크면 유권자의 혼란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에 의해 결정되기에 변동이 크면 유권자의 혼란과 불편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동의 경우가 최소가 되는 원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다. 주어진 제도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도 변경에 관한 제언은 가급적 자제하고자 한다. 필요할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복수의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라.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닌 경우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마. 신도시 지역과 같이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서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의 균질성이 높은 경우 가급적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바.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움직임을 고려하여 북부와 남부의 권역을 침범하여 조정하지 않는 원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경기 남부지역

- 가. 경기 남부지역 :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과천시 21개 시·군
- 나. 불부합 선거구 : 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화성시을, 화성시병, 광명시갑 10개 선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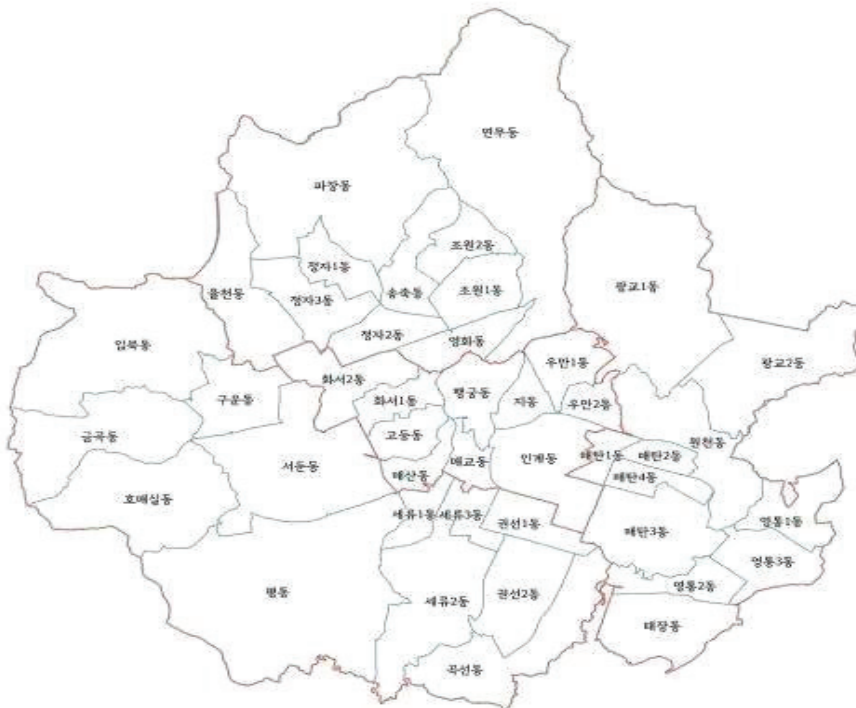
다. 수원시무, 시흥시갑, 광명시갑 선거구의 불부합은 해당 시군에서  
 경계 조정을 통해 해소 의견을 제시하고, 평택시갑, 평택시을, 하남시,  
 화성시을, 화성시병 선거구의 불부합은 해당 시군에서 선거구를  
 신설하여 불부합을 해소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용인시을과  
 용인시병 선거구의 경우 불부합 해소 의견이 용인시 전체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기에 용인시 선거구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수원시무 선거구

가. 불부합 사유 : 인구수 280,243명으로 9,201명 상한 초과

나. 해소 방안 :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 안에서 경계 조정으로 해소

다. 수원시 행정구역 및 선거구 현황



장안구	270,061		권선구	367,601		팔달구	192,965		영통구	360,993	
영화동	19,442	(갑)	서둔동	37,647	(을)	매교동	20,141	(병)	매탄1동	12,795	(정)
연무동	15,543		구운동	23,907		매산동	9,967		매탄2동	14,372	
조원1동	29,164		입북동	16,120		고등동	20,509		매탄3동	35,241	
조원2동	18,008		평동	40,988		화서1동	21,819		매탄4동	20,972	
송죽동	19,141		금곡동	44,770		화서2동	24,956		원천동	40,421	
파장동	22,617		호매실동	45,398	(무)	지동	10,076		영통1동	33,832	
정자1동	28,073		세류1동	9,848		우만1동	19,479		광교1동	52,857	
정자2동	36,478		세류2동	23,545		우만2동	17,000		광교2동	29,031	
정자3동	40,324		세류3동	18,278		인계동	39,135		영통2동	26,006	
율천동	41,271		(을)	권선1동		24,398	행궁동		9,883	영통3동	32,160
			권선2동	47,300			망포1동	31,929	(무)		
			곡선동	35,402			망포2동	31,377			

## 라. 조정 의견

- 1안 : 최소 조정안을 검토해 보면 (무)선거구의 세류1동을 (을)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한다.
- 2안 : 행정구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살펴보면 (갑)선거구는 장안구 일부, (을)선거구는 권선구 일부와 장안구의 율천동, (병)선거구는 팔달구, (정)선거구는 영통구 일부, (무)선거구는 권선구 일부와 영통구 일부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는 장안구 270,061명, 권선구 367,601명, 팔달구 192,965명, 영통구 360,993명으로 행정구만 중심으로 사고 하면 장안구 전체를 (갑), 팔달구 전체를 (병)으로 하고 권선구 일부를 (을), 영통구 일부를 (정), 권선구 일부와 영통구 일부를 (무)로 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간에 인구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 3안 : 선거구 조정을 최소로 하면서 같은 영통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무)선거구에서 (정)선거구로 영통3동을 조정하여 (무)선거구의

불부합을 해소하고, 인구가 가장 적은 (병)선거구에 경계 등을 고려하여 (정)선거구의 매탄1동을 조정하여 (정)선거구의 불부합을 해소함과 동시에 (갑),(을),(병),(정),(무)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최소화 하는 안을 제시한다.

## 마. 조정안

### ○ 1안

(갑)	228,790	(을)	259,949	(병)	192,965	(정)	239,521	(무)	270,395
영화동	19,442	울천동	41,271	매교동	20,141	매탄1동	12,795	세류2동	23,545
연무동	15,543	서둔동	37,647	매산동	9,967	매탄2동	14,372	세류3동	18,278
조원1동	29,164	구운동	23,907	고등동	20,509	매탄3동	35,241	권선1동	24,398
조원2동	18,008	입북동	16,120	화서1동	21,819	매탄4동	20,972	권선2동	47,300
송죽동	19,141	평동	40,988	화서2동	24,956	원천동	40,421	곡선동	35,402
파장동	22,617	금곡동	44,770	지동	10,076	영통1동	33,832	영통2동	26,006
정자1동	28,073	호매실동	45,398	우만1동	19,479	영통2동	33,832	영통3동	32,160
정자2동	36,478	세류1동	9,848	우만2동	17,000	광교1동	52,857	망포1동	31,929
정자3동	40,324			인계동	39,135	광교2동	29,031	망포2동	31,377
				행궁동	9,883				

### ○ 2안

(갑)	270,061	(을)	260,501	(병)	192,965	(정)	239,521	(무)	228,572
영화동	19,442	서둔동	37,647	매교동	20,141	매탄1동	12,795	권선1동	24,398
연무동	15,543	구운동	23,907	매산동	9,967	매탄2동	14,372	권선2동	47,300
조원1동	29,164	입북동	16,120	고등동	20,509	매탄3동	35,241	곡선동	35,402
조원2동	18,008	평동	40,988	화서1동	21,819	매탄4동	20,972	영통2동	26,006
송죽동	19,141	금곡동	44,770	화서2동	24,956	원천동	40,421	영통3동	32,160
파장동	22,617	호매실동	45,398	지동	10,076	영통1동	33,832	망포1동	31,929
정자1동	28,073	세류1동	9,848	우만1동	19,479	영통2동	33,832	망포2동	31,377
정자2동	36,478	세류2동	23,545	우만2동	17,000	광교1동	52,857		
정자3동	40,324	세류3동	18,278	인계동	39,135	광교2동	29,031		
울천동	41,271			행궁동	9,883				

○ 3안

(갑)	228,790	(을)	250,101	(병)	205,760	(정)	258,886	(무)	248,083
영화동	19,442	울천동	41,271	매교동	20,141	매탄2동	14,372	세류1동	9,848
연무동	15,543			매산동	9,967			세류2동	23,545
조원1동	29,164	서둔동	37,647	고등동	20,509	매탄3동	35,241	세류3동	18,278
조원2동	18,008			화서1동	21,819			매탄4동	20,972
송죽동	19,141	구운동	23,907	화서2동	24,956	원천동	40,421	권선1동	24,398
파장동	22,617			지동	10,076			권선2동	47,300
정자1동	28,073	입북동	16,120	우만1동	19,479	영통1동	33,832	곡선동	35,402
정자2동	36,478			평동	40,988			우만2동	17,000
정자3동	40,324	금곡동	44,770	인계동	39,135	광교1동	52,857	망포1동	31,929
				행궁동	9,883				
		호매실동	45,398	매탄1동	12,795	영통3동	32,160	망포2동	31,377

## 5. 시흥시갑 선거구

가. 불부합 사유 : 인구수 286,940명으로 15,898명 상한 초과

나. 해소 방안 : 해당 지자체인 시흥시 안에서 경계 조정으로 해소

다. 조정 의견

- 시흥시갑 선거구의 능곡동(25,204명)을 시흥시을 선거구로 조정하여 불부합을 해소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흥시갑	261,659	시흥시을	251,809
대야동	43,172	군자동	20,963
신천동	35,104	월곶동	17,214
은행동	55,633	정왕본동	19,745
		정왕1동	22,546
과림동	1,893	정왕2동	32,007
매화동	11,894	거북섬동	7월 신설
목감동	41,679	정왕3동	22,631
신현동	9,606	정왕4동	20,488
연성동	24,550	배곧1동	35,450
		배곧2동	35,484
장곡동	38,128	<b>시흥시능곡동</b>	<b>25,281</b>

## 6. 광명시갑 선거구

가. 불부합 사유 : 광명시갑 인구수 134,855명으로 666명 하한 미달

나. 해소 방안 : 해당 지자체인 광명시 안에서 경계 조정으로 해소

다. 조정 의견

- 1안 : 광명시을의 **학운동(2,001명)**을 광명시갑 선거구로 조정하여 불부합을 해소한다. 인구수가 많지 않은 광명시을 선거구(152,748명)를 조정하여야 하기에 경계를 고려하여 가장 인구수가 적은 동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광명의 경우 광명권(광명1~7동), 철산권(철산1~4동), 소하권(소하1~2, 일직동)과 농촌지역인 학온권으로 생활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고려하였다. 또한, 향후 (갑)지역의 광명1동의 경우 재개발로 인해 인구수를 복원할 것이고, 학운동의 경우 3기 신도시 및 광명시 흥테크노밸리 개발 등의 사유가 있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갑)지역에 편입하였다.
- 2안 : 1안의 경우 조정 후에도 광명시갑의 인구수가 136,856명으로 하한 인구수인 135,521명을 초과하여 불부합은 해소할 수 있으나, 고양시, 용인시 등의 사례에서 제안하였듯이 상한 기준이 상승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계를 고려하여 인구수가 다음으로 적은 **하안4동(12,127명)**을 조정하는 안을 2안으로 제시한다.

1안				2안			
광명시갑	136,856	광명시을	150,747	광명시갑	146,982	광명시을	140,621
광명1동	61	하안1동	25,503	광명1동	61	하안1동	25,503
광명2동	2,957	하안2동	13,488	광명2동	2,957	하안2동	13,488
광명3동	9,748			광명3동	9,748		
철산1동	10,668	하안3동	19,416	철산1동	10,668	하안3동	19,416
철산2동	5,607			철산2동	5,607		
철산3동	37,340	하안4동	12,127	철산3동	37,340	학은동	2,001
광명4동	11,568	소하1동	30,808	광명4동	11,568	소하1동	30,808
광명5동	12,042			광명5동	12,042		
광명6동	13,157	소하2동	27,631	광명6동	13,157	소하2동	27,631
광명7동	20,601			광명7동	20,601		
철산4동	11,106	일직동	21,774	철산4동	11,106	일직동	21,774
학은동	2,001			하안4동	12,127		

## 7. 평택시갑, 평택시을 선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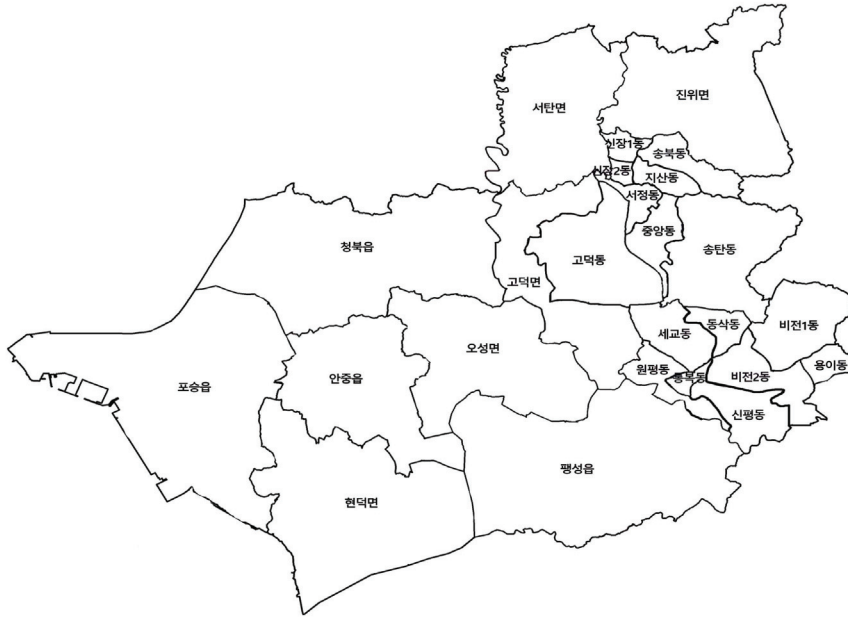
가. 불부합 사유 : 평택시갑 인구수 282,563명으로 11,521명 상한 초과,  
평택시을 인구수 297,448명으로 26,405명 상한 초과

나. 해소 방안 : 평택시(갑)과 (을)의 일부 동으로 평택시병 선거구 신설

다. 평택시 선거구의 특징

- 95년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3개 시·군이 통합하여 현 평택시가 되었다. 당시 평택군은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청북면, 오성면, 안중면, 현덕면, 포승면, 팽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송탄시 관할의 현재 행정동은 신장1동, 신장2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중앙동, 송탄동에 해당된다.
- 현재 평택시는 북부지역은 송탄출장소가 서부지역은 안중출장소가 남부지역은 평택시청이 관할하고 있다. 송탄출장소가 관할하는 북부 지역은 서탄면, 진위면, 신장1동, 신장2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고덕면, 고덕동, 중앙동, 송탄동이며, 안중출장소가 관할하는 서부지역은 청북읍, 오성면,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이다.



평택시갑 선거구				평택시을 선거구			
소계	282,563	95년 이전	관할행정	소계	297,448	95년 이전	관할행정
진위면	11,383	평택군	북부	안중읍	43,621	평택군	서부
서탄면	3,589	평택군	북부	포승읍	24,427	평택군	서부
지산동	12,922	송탄시	북부	청북읍	27,054	평택군	서부
송북동	21,966	송탄시	북부	오성면	6,624	평택군	서부
신장1동	7,134	송탄시	북부	현덕면	4,961	평택군	서부
신장2동	5,295	송탄시	북부	평성읍	29,083	평택군	남부
중앙동	44,151	송탄시	북부	고덕면	13,228	평택군	북부
서정동	24,612	송탄시	북부	고덕동	29,687	평택군	북부
송탄동	22,313	송탄시	북부	비전2동	58,278	평택시	남부
통북동	3,969	평택시	남부	용이동	25,886	평택시	남부
세교동	33,982	평택시	남부	신평동	21,177	평택시	남부
비전1동	51,985	평택시	남부	월평동	13,422	평택시	남부
동삭동	39,262	평택시	남부				

- 95년 이전 평택군 지역은 193,657명이고, 송탄시 지역은 138,393명, 평택시 지역은 247,961명이다. 관할행정으로 보았을 때 송탄출장소가 관할하는 북부지역은 196,280명이고, 안중출장소가 관할하는 서부지역은 106,687명, 남부지역은 277,044명이다.



라. 조정 의견

- 평택시 인구가 580,011명이므로, 가장 이상적인 신설선거구의 크기는 19만 명 정도가 된다. 이는 과거 평택군 지역의 인구수나 송탄출장소가 관할하는 북부지역의 인구수와 유사하다. 따라서, 1안은 평택군 지역을 (을)선거구 중심이 되도록 (병)선거구를 신설한다. 2안은 북부지역을 (갑)선거구 중심이 되도록 (병)선거구를 신설한다.
- 1안 : (갑)선거구에서 통북동, 세교동을 (을)선거구에서 비전2동, 용이동, 신평동, 원평동을 이동하여 (병)선거구를 신설한다. (갑)선거구에서 과거 평택군 지역이었던 진위면과 서탄면을 (을) 선거구로 이동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평택시갑	229,640	평택시을	185,797	평택시병	164,574
지산동	12,922	진위면	11,383	통북동	3,969
송북동	21,966	서탄면	3,589	세교동	33,982
신장1동	7,134	안중읍	43,621	팽성읍	29,083
신장2동	5,295	포승읍	24,427	비전2동	58,278
중앙동	44,151	청북읍	27,054	용이동	25,886
서정동	24,612	오성면	6,624	신평동	21,177
송탄동	22,313	현덕면	4,961	원평동	13,422
비전1동	51,985	고덕면	13,228		
동삭동	39,262	고덕동	29,687		

- 2안 : (갑)선거구에서 비전1동과 동삭동을 (을)선거구에서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을 이동하여 (병)선거구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평택시갑	191,316	평택시을	178,685	평택시병	210,010
진위면	11,383	안중읍	43,621	비전1동	51,985
서탄면	3,589	포승읍	24,427	동삭동	39,262
지산동	12,922	청북읍	27,054	비전2동	58,278
송북동	21,966	오성면	6,624	용이동	25,886
신장1동	7,134	현덕면	4,961	신평동	21,177
신장2동	5,295	고덕면	13,228	원평동	13,422
중앙동	44,151	고덕동	29,687		
서정동	24,612	팽성읍	29,083		
송탄동	22,313				
통북동	3,969				
세교동	33,982				

## 8. 하남시 선거구

가. 불부합 사유 : 인구수 326,496명으로 55,454명 상한 초과

나. 해소 방안 : 하남시 선거구를 하남시갑, 하남시을 선거구로 분구

다. 조정 의견

- 미사지구인 미사1동과 미사2동, 풍산지구인 미사3동과 덕풍3동을 하남시을 선거구로 신설하는 안을 제시한다. 이 경우 인구는 156,058명이다.
- 하남시청이 위치하는 신장2동을 포함하는 하남시갑 선거구는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덕풍1동, 덕풍2동으로 구성되는 안이며, 이 경우 인구는 170,438명이다.

## 라. 참고 사항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서 조항은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를 구성하고 있기에 하남시의 경우 이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광주시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는 없다.

## 9. 화성시을, 화성시병 선거구

가. 불부합 사유 : 화성시을 인구수 351,194명으로 80,152명 상한 초과,  
화성시병 인구수 302,178명으로 31,136명 상한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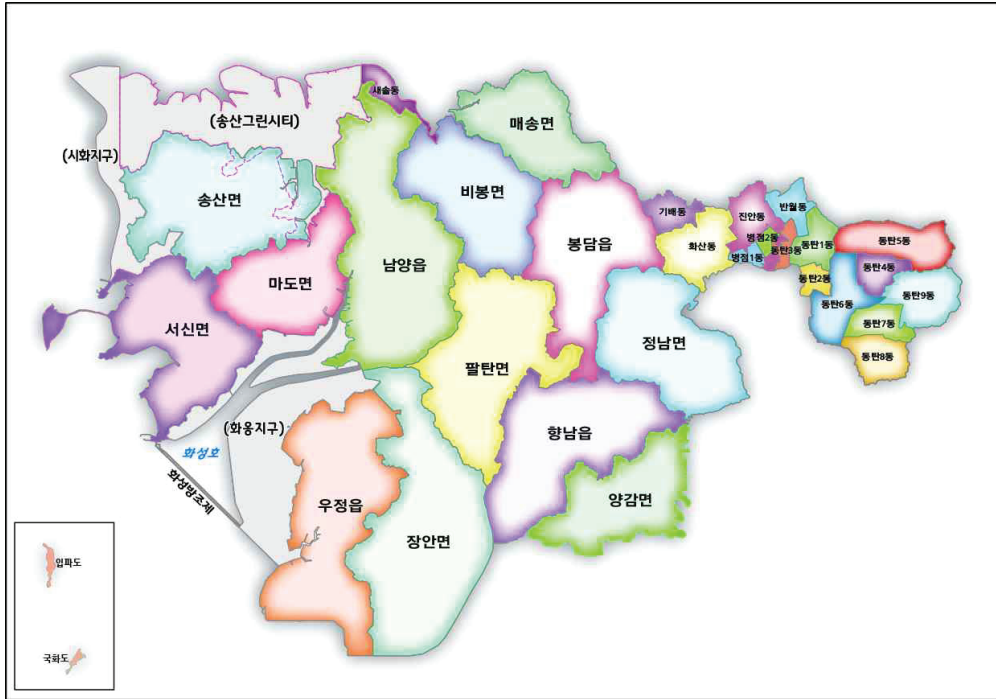
나. 특례선거구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례선거구로 봉담읍을 (갑)과 (병)으로 법정동으로 분구

다. 해소 방안 : 화성시(을)과 (병)의 일부 동으로 화성시정 선거구 신설,  
봉담읍을 전체를 (병)선거구로 조정

## 라. 조정 의견

- 동탄신도시는 동탄1~3동이 동탄1신도시, 동탄4~9동이 동탄2신도시로 통칭된다. 경계와 인구를 고려하여 동탄2신도시 중 동탄5동과 동탄6동 중 하나의 동을 신설선거구로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 (을)에서 동탄1동과 동탄2동, 동탄5동을, (병)에서 반월동과 동탄3동을 조정하여 (정)선거구를 신설한다.



(갑)	254,637	(을)	219,481	(병)	234,089	(정)	206,293
향남읍	86,891	동탄4동	53,035	봉담읍	88,083	반월동	33,206
팔탄면	10,011			기배동	16,267	동탄3동	41,374
양감면	4,020	동탄6동	41,593	화산동	23,834	동탄1동	50,714
정남면	11,294			진안동	45,689		
우정읍	17,578	동탄7동	91,525	병점1동	36,833	동탄2동	34,725
남양읍	50,321			동탄8동	33,328	동탄5동	46,274
매송면	6,822	동탄9동	신설	병점2동	23,383		
비봉면	6,970			서신면	7,213		
마도면	6,971	장안면	10,215				
송산면	10,981	새솔동	25,350				

## 10. 용인시 선거구

가. 불부합 사유 : 용인시를 인구수 271,326명으로 284명 상한 초과,  
용인시병 인구수 289,443명으로 18,401명 상한 초과.

※ 용인시 전체 인구수 1,074,650명, 갑·을·병·정 선거구

나. 해소 방안 :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 안에서 경계 조정으로 해소

### 다. 현행 선거구 현황

- 용인시의 선거구는 처인구가 258,883명으로 (갑)선거구를, 기흥구가 438,015명으로 (을)과 (정)선거구를, 수지구가 377,752명으로 (병)과 (정)선거구를 이루고 있다. (을), (병), (정)을 이루고 있는 기흥구와 수지구 인구의 합은 815,767명으로 3개 선거구로 조정할 경우 선거구당 인구수가 271,923명이 되어 불부합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

처인구	258,883	기흥구	438,015	수지구	377,752
포곡읍	33,479	신갈동	37,857	상현1동	20,133
모현읍	26,723	영덕1동	30,187	상현3동	27,699
역북동	31,856	영덕2동	17,422	풍덕천1동	35,707
삼가동	12,505	기흥동	21,478	풍덕천2동	41,491
유림동	36,067	서농동	26,064	죽전2동	18,203
중앙동	25,006	구갈동	41,346	신봉동	40,936
이동읍	20,546	상갈동	13,153	동천동	50,667
남사읍	23,735	보라동	32,963	성북동	54,607
양지면	19,565	동백3동	26,872	죽전1동	28,668
동부동	13,170	상하동	23,984	죽전3동	26,657
월삼면	7,976	구성동	39,893	상현2동	32,984
백암면	8,255	마북동	31,670		
		동백1동	32,403		
		동백2동	27,084		
		보정동	35,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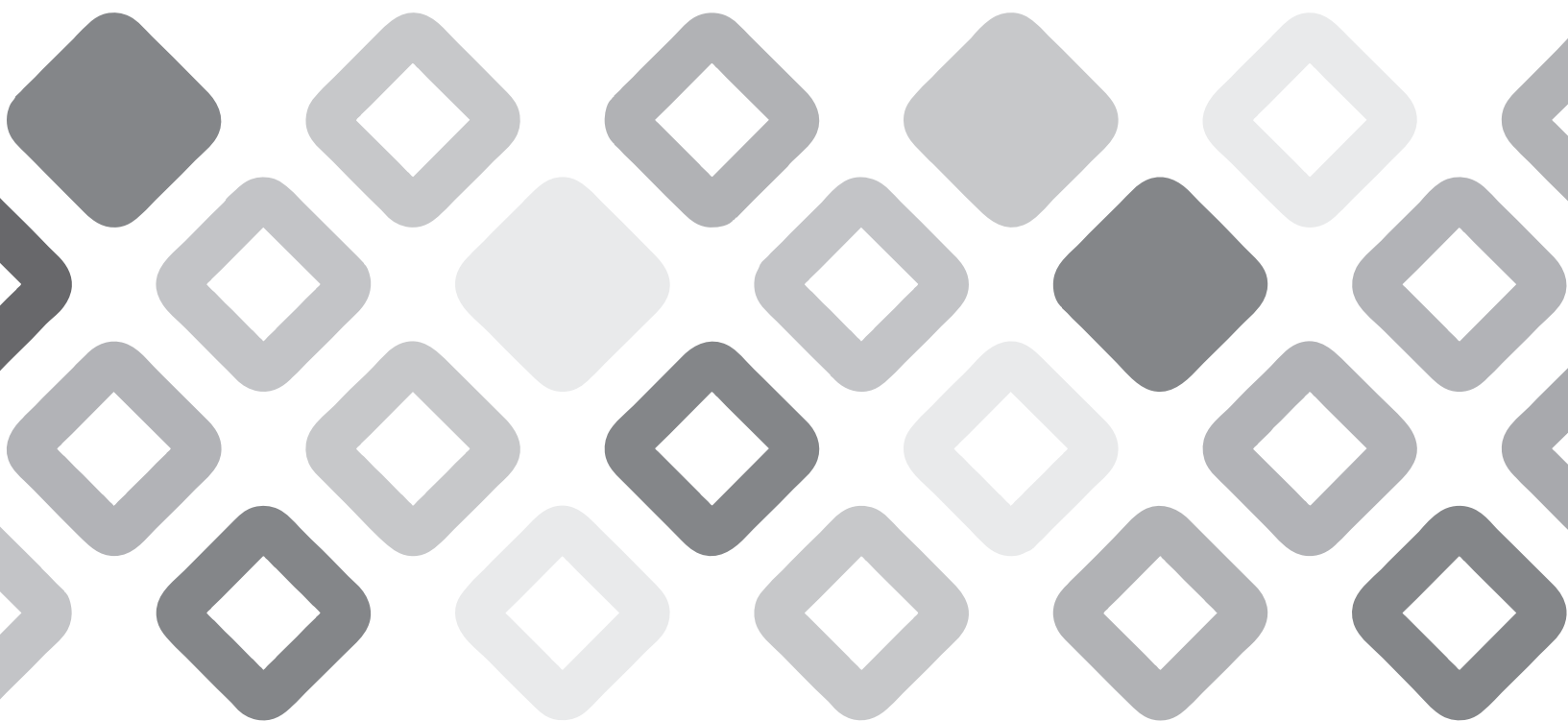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 라. 조정 의견

- 1안 : 경계와 인구를 고려하여 (병)선거구에서 (정)선거구로 죽전2동을 이동하면 (을)선거구 271,326명, (병)선거구 271,240명, (정)선거구 273,201명으로 가장 고른 분포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상한인구수 271,042명을 모두 초과하게 되며 최소 2,159명의 상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 (고양의 경우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안 : 용인시를 5개 선거구로 조정한다. 이 경우 기흥구 438,015명, 수지구 377,752명, 처인구 258,883명이므로 기흥구에 2개 선거구, 수지구에 2개 선거구로 조정하여 용인시를 용인시처인구, 용인시기흥구(갑), (을), 용인시수지구(갑), (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이 행정구역을 감안할 때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제시한다.



**김 재 민**

**경기일보 부국장**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획정 기준 불부합 경기도 지역선거구 획정 제안

김재민 | 경기일보 부국장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관련, 선거일 전 1년(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제24조의 2)을 위반하고 있다. 역대 국회도 지속적으로 위반해온 탓에 이젠 당연지사가 된 듯하다.

국회의원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하지만 24조2항은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서 전혀 처벌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는 이 조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처벌 규정을 넣는 것이 어렵다면 단서 조항을 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13개월(2023년 3월 10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기한을 정해 정개특위에서 기준 확정이 안 되면 획정위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해 획정안까지 만들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4년 전에도 국회의 획정기준 확정이 늦어지면서 획정위가 자체 기준을 통해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 중대선거구제, 경기도 일부 지역 도입 가능성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정개특위는 3개 안(①도농 복합형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구·병립형 비례대표제)을 제시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이중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 3곳(수원·고양·용인)이 있는데, 이들 지역에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선거구획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가능성은 적지만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기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21대 지역구 59석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경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 ■ 확정 기준 불부합 경기도 지역선거구 확정 제안

확정 기준에 불부합한 경기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상한인구수(271,042명) 초과 12곳(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고양시을, 고양시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파주시갑, 화성시을, 화성시병)과 하한인구수(135,521명) 미달 2곳(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으로 총 14곳에 달한다.

이중 경기 남부는 상한선 초과 9곳(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시흥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화성시을, 화성시병)과 하한선 미달 1곳(광명시갑)이다.

### 1. 수원특례시(수원무 280,243, +9,201)

수원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5개 선거구(갑·을·병·정·무)를 가지고 있고, 인구는 1,191,620명이다.(2023년 1월 말 기준) 5개 선거구 중 수원무가 상한인구를 초과했다.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가 있고, <수원갑>은 장안구, <수원을>은

권선구 일부와 장안구 율천동, <수원병>은 팔달구 일원, <수원정>은 영통구, <수원무>는 권선구와 영통구 일부로 구성돼 있다.

수원시 갑 선거구	장안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수원시 을 선거구	장안구 율천동,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시 병 선거구	팔달구 일원
수원시 정 선거구	영통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b>영통1동</b> , 광고1동, 광고2동
수원시 무 선거구	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 《 수원무(280,243, +9,201) 조정 제안 》

제안 1) 영통구 영통3동(32,160)을 영통1동이 있는 수원정으로 조정

⇒ 수원무 280,243 → 248,083, 수원정 239,521 → 271,681,  
수원갑(228,790) · 수원을(250,101) · 수원병(192,965) 변동 없음.

제안 2) 구별, 생활권 등 감안해 5개 동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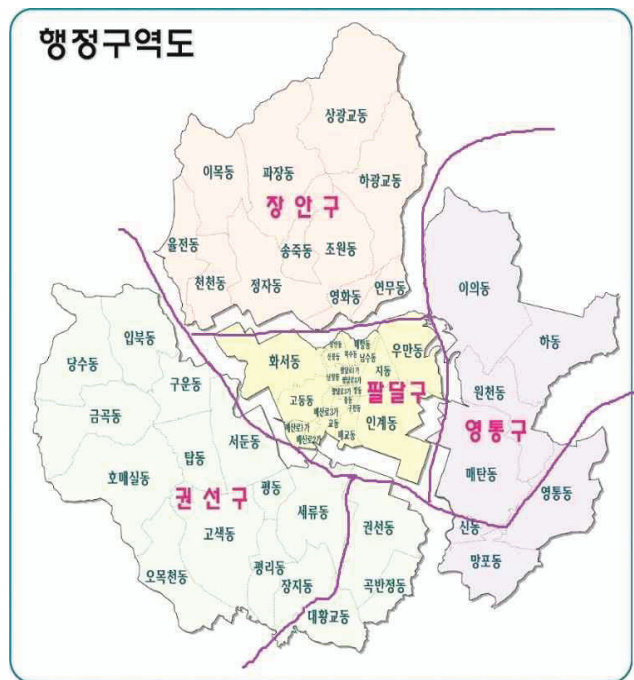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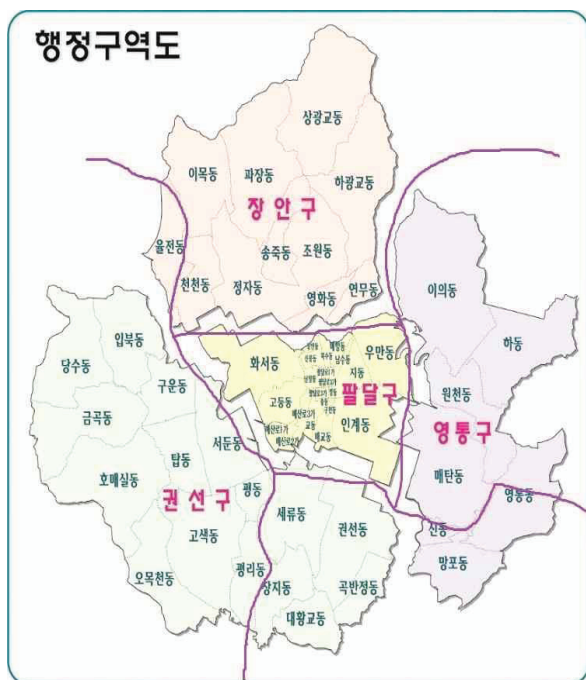
△수원무 권선구 세류1동(9,848) 세류2동(23,545) 세류3동(18,278) → 수원을  
△수원정 영통1동(33,832) → 수원무(영통1·2·3동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선거구에 포함)

△장안구 동 중 유일하게 수원을에 있는 율천동(41,271) → 수원갑

⇒ 수원무 280,243 → 262,404 (세류1~3동 빠지고 영통1동 포함)  
수원정 239,521 → 205,689 (영통1동 빠짐)  
수원을 250,101 → 260,501 (율천동 빠지고, 세류1~3동 포함)  
수원갑 228,790 → 270,061 (율천동 포함)  
수원병(192,965) 변동 없음

조정 후)

수원시 갑 선거구	장안구 일원
수원시 을 선거구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수원시 병 선거구	팔달구 일원
수원시 정 선거구	영통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광고1동, 광고2동
수원시 무 선거구	권선구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영통구 영통1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행정구역도(출처 수원시청) : 현 국회의원 선거구(좌), 제안 국회의원 선거구(우)

2. 평택시(평택갑 282,563 +11,521 평택을 297,448 +26,406)

평택시는 고덕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등 첨단산업단지 유치로 인구가 급증, 2023년 1월 말 기준 580,011명이다.

갑·을 선거구 모두 상한인구수를 초과, 분구가 불가피하다. 평택은 북부·남부·서부지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21대 총선 당시 행정 읍·면·동 23개소 중 북부 중심 12개 면·동은 평택갑, 남부·서부 중심 11개 읍·면·동은 평택을이었다.

평택시 갑 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북동, 비전1동, 세교동
평택시 을 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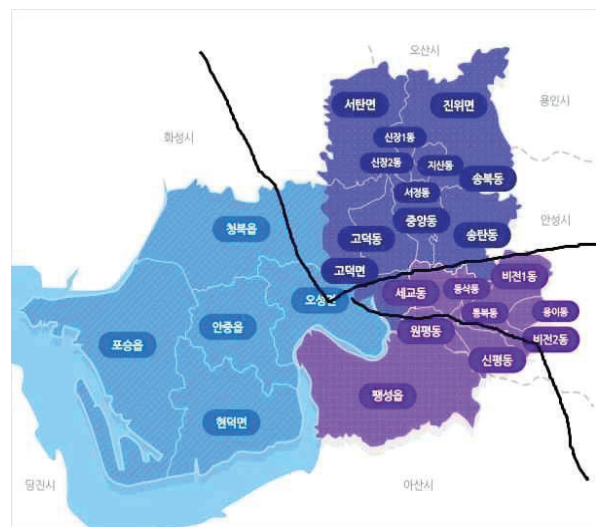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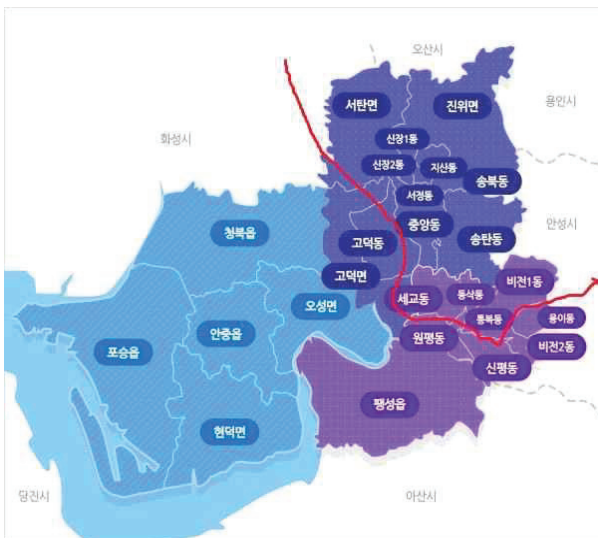
### 《 평택 조정 제안 》

현재 행정 읍면동은 23개소에서 25개소(고덕동, 동삭동 추가)로 늘었으며, 북부 11개, 남부 9개소, 서부 5개소다.

이를 중심으로 북부 11개소를 **평택갑(196,280명)**으로 하고, 서부 5개소(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와 남부 3개소(팽성읍, 신평동, 원평동)를 합해 8개소를 **평택을(170,369명)**, 비전1동 비전2동을 중심으로 남부 6개소를 **평택병(213,262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정 후)

평택시 갑 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b>고덕면, 고덕동</b>
평택시 을 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평택시 병 선거구(신설)	통북동, 비전1동, 세교동, 비전2동, 용이동, 동삭동



행정구역 지도 (출처 평택시청) 현 국회의원 선거구(좌) 제안 국회의원 선거구(우)

### 3. 시흥시(시흥갑 286,940 +15,898)

시흥시는 은계, 목감, 장현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어 513,468명 (2023년 1월 말 기준)이며, 시흥갑이 상한인구수를 초과했다.

21대 총선 당시 18개 행정동 중 시흥갑은 10개동, 시흥을은 8개동이었으며, 현재는 시흥을 배곧동이 배곧1동과 배곧2동으로 분리돼 19개 행정동이다.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동

시흥은 6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시흥갑은 △은계지구권(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목감지구권(신현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장현지구권(연성동, 능곡동, 장곡동), 시흥을은 △거모권(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오이도권(배곧1동, 배곧2동, 월곶동), △시화호권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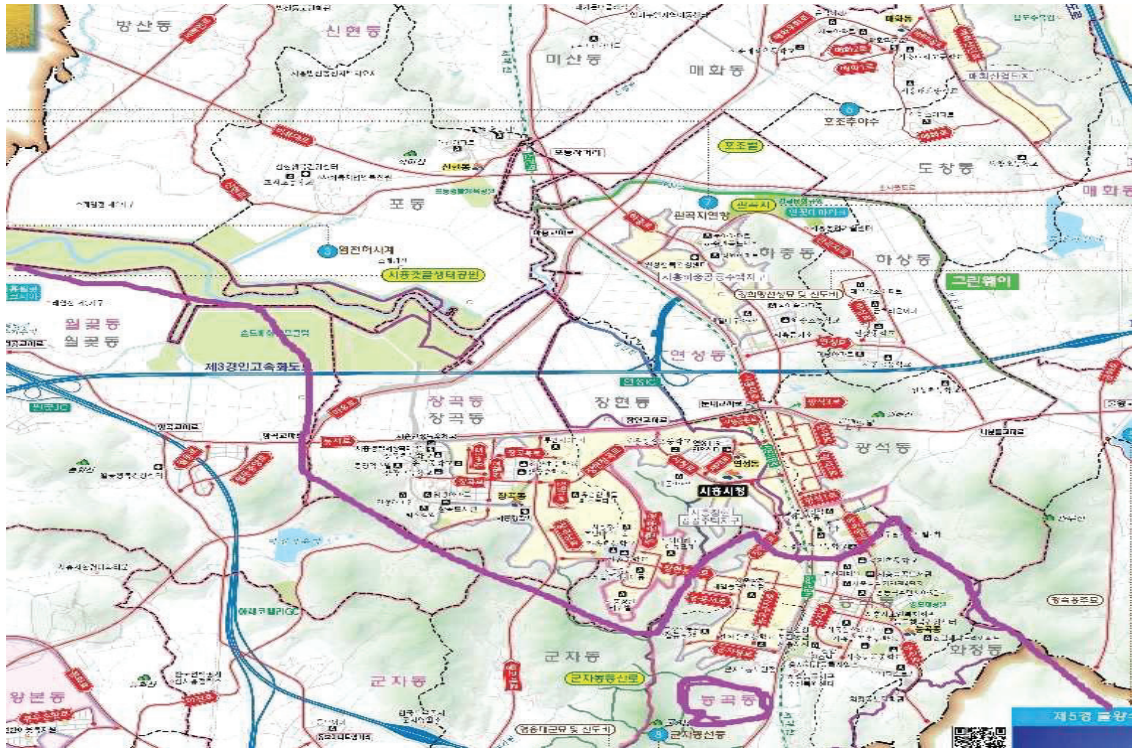
권역별 지도(출처 시흥시청)

### 《시흥갑(286,940, +15,898) 조정 제안》

시흥갑 장현지구권의 능곡동을 시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능곡동의 법정동명이 능곡동, 광석동, 군자동으로 인근 거모권 군자동(행정동명)과 이름이 같다.

#### 조정 후)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261,659)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일곡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 능곡동 (251,809)



행정구역지도(출처 시흥시청), 능곡동을 시흥으로 포함(굵은선)

### 4. 하남시(326,496, +55,454)

하남시는 미사 강변도시·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 326,496명(2023년 1월 말 기준)으로 상한인구수를 초과했다.

하 남 시 선 거 구	하남시 일원
-------------	--------

## 《 하남 조정 제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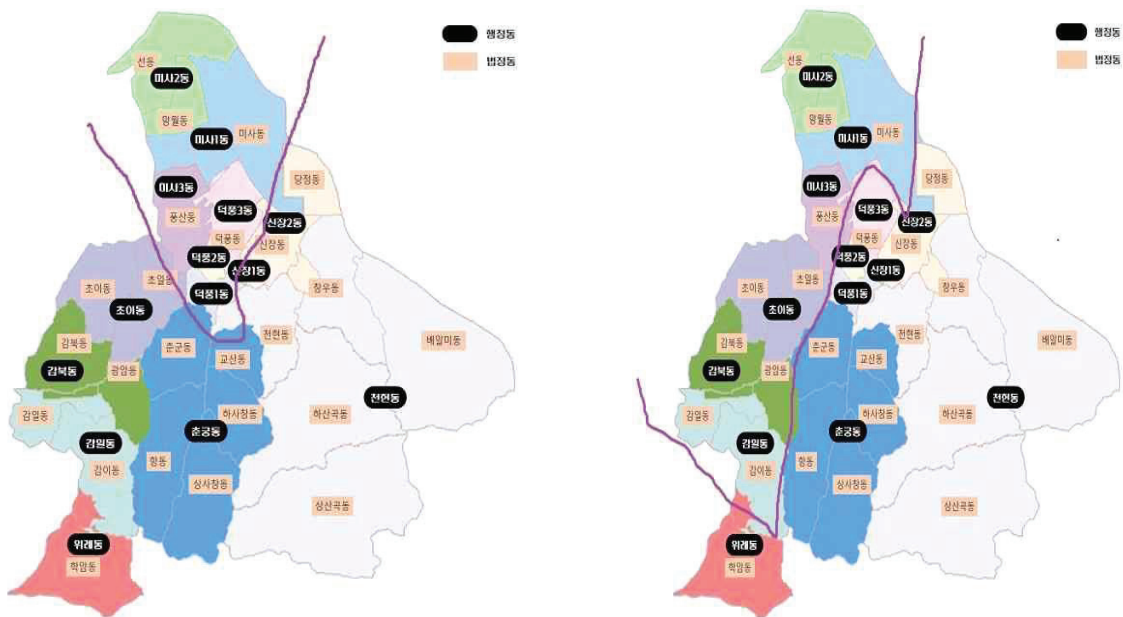
행정동은 14개소로, 미사지구 중심으로 상하분구 혹은 동서분구를 제안한다.

### 제안 1) 상하로 분구시

하남갑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189,290)
하남을	신장1동 신장2동 천현동 춘궁동 초이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137,206)

### 제안 2) 동서로 분구시

하남갑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초이동 감북동 감일동 (172,620)
하남을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신장1동 신장2동 천현동 춘궁동 위례동 (153,876)



지도(행정동·법정동, 출처 하남시청) 남북 분구 제안(좌) 동서 분구 제안(우)

## 5. 용인특례시(용인을 217,326 +284 용인병 289,443 +18,401)

용인특례시는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로 이뤄져 있으며, 용인갑은 처인구 일원, 용인을은 기흥구 일부, 용인병은 수지구 일부, 용인정은 기흥구·수지구 일부 지역을 각각 선거구로 하고 있다.



1,074,650명(2023년 1월 말 기준)으로 용인읍과 용인병이 각각 인구상한을 초과했다. 용인병 상현1동이 상현1동과 상현3동으로, 용인정 죽전1동이 죽전1동과 죽전3동으로 각각 분동됐다.

《용인읍(217,326 +284) 용인병(289,443 +18,401) 조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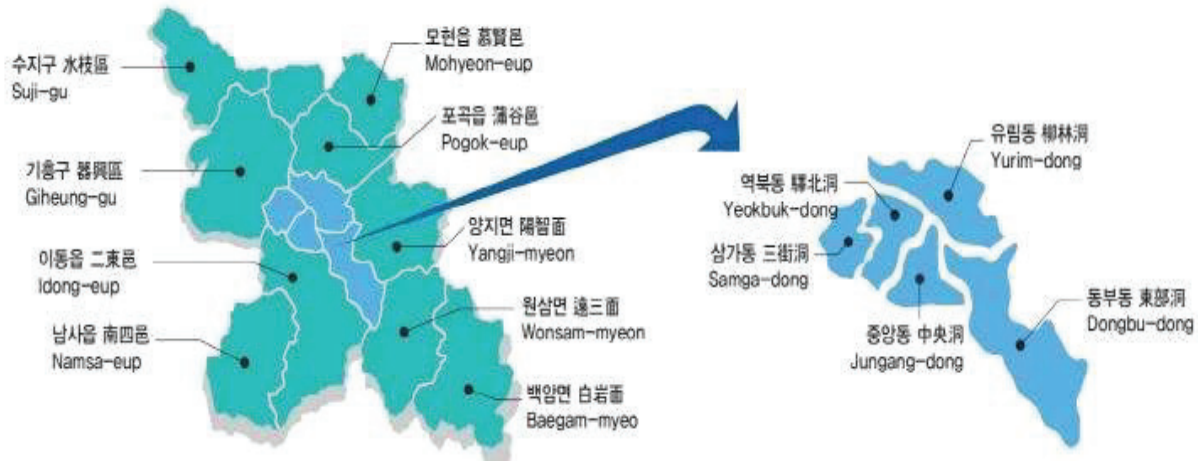
용인병에서 18,401명을 줄이기 위해서는 죽전2동(18,203) 조정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상현1동(20,133)을 용인정으로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정(254,998)에 상현1동을 더하면 275,131명으로 상한인구수를 초과하게 되고, 일부 동을 용인읍로 다시 조정해야 하나 용인읍도 이미 284명을 초과한 상태여서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용인갑(258,883)도 상한인구수(271,042)보다 12,159명 적은 것에 불과, 이보다 작은 동이 와야 하나 용인읍·용인병·용인정 선거구에는 이보다 작은 동이 없고, 용인정(254,998)도 상한인구수에 16,044명 적어 용인병 초과인구(18,401)를 다 포함할 수 없다. 용인병, 용인읍, 용인정 선거구 두 곳 이상을 동 단위로 나눠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안 1) 용인병 선거구 일부 → 용인정, 용인정·용인읍 선거구 일부 → 용인갑

제안 2) 용인병, 용인읍 선거구 일부 → 용인정, 용인정 선거구 일부 → 용인갑

용인시갑선거구 (258,883)	처인구 일원	포곡읍 33,479 모현읍 26,723 이동읍 20,546 남사읍 23,735 원삼면 7,976 백암면 8,255 양지면 19,565 중앙동 25,006 역북동 31,856 삼가동 12,505 유림동 36,067 동부동 13,170
용인시을선거구 (271,326) +284	기흥구	신갈동 37,857 영덕1동(영덕동) 30,187 영덕2동(영덕동, 하갈동) 17,422 구갈동 41,346 상갈동 13,153 보라동(보라동, 지곡동) 32,963 기흥동(공세동, 고매동) 21,478 서농동(농서동, 서천동) 26,064 동백3동(동백동, 중동) 26,872 상하동 23,984
용인시병선거구 (289,443) +18,401	수지구	풍덕천1동 35,707 풍덕천2동 41,491 신봉동 40,936 죽전2동 18,203 동천동 50,667 <u>상현1동 20,133</u> 상현3동 27,699 성북동 54,607
용인시정선거구 (254,998)	기흥구	구성동(언남동, 청덕동) 39,893 마북동 31,670 동백1동(동백동) 32,403 동백2동(중동) 27,084 보정동 35,639
	수지구	죽전1동 28,668 죽전3동 26,657 상현2동 32,984



행정안내도(출처 용인특례시청)

## 6. 화성시(화성을 351,194 +80,152 화성병 302,178 +31,136)

화성시는 동탄신도시를 필두로 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 화성갑 261,128명, 화성을 351,194명, 화성병 302,178명으로 전체 914,500명(2023년 1월 말 기준)이다.

화성을과 화성병이 상한인구수를 초과, 분구가 불가피하다. 4년 전에도 봉담읍을 화성갑과 화성병 선거구로 나눈 바 있다.

봉담 서쪽이 화성갑이며, 봉담 동쪽부터 병점1·2동과 동탄3동이 화성병, 동탄3동을 제외하고 동탄1동~동탄8동이 화성을이었다.

4읍 9면 15동이었으나 동탄7동에서 동탄9동이 분리돼 4읍 9면 16동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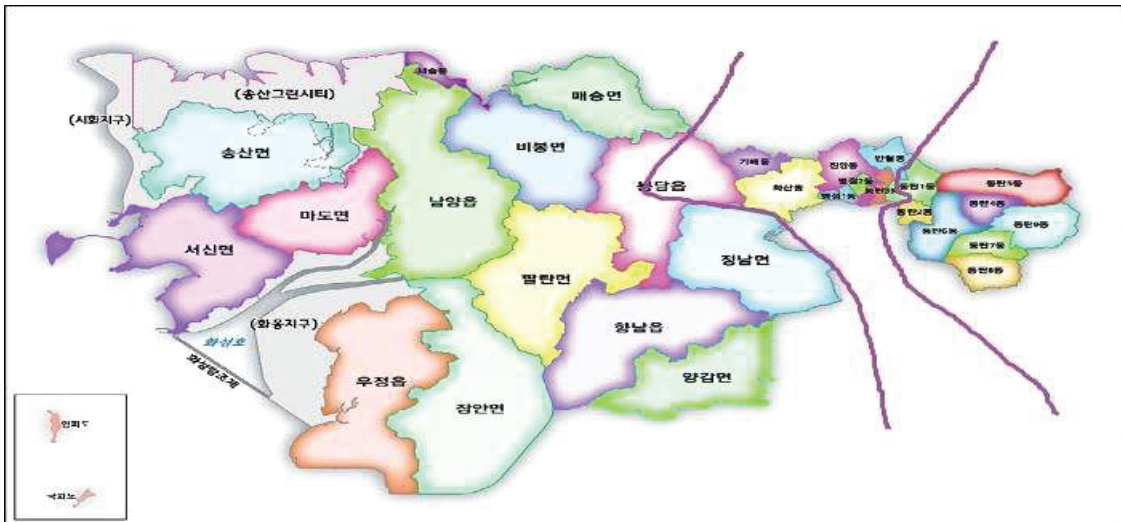
화성시갑 선거구	봉담읍(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동리, 상기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화성시을 선거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화성시병 선거구	봉담읍(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3동

《화성을(351,194 +80,152) 화성병(302,178 +31,136) 조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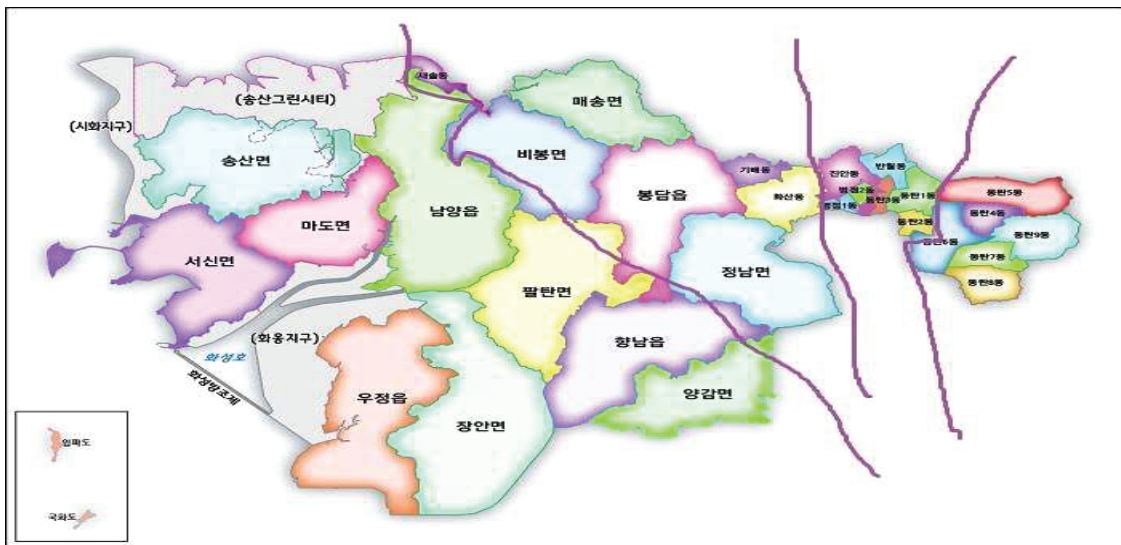
봉담읍과 향남읍의 인구가 각 8만 명을 넘어 이를 중심으로 두 개의 선거구를 별도로 구성하고, 동탄 1~9동을 동탄 1~3동과 4~9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 후)

화성시갑 선거구 (204,201)	향남읍 남양읍 우정읍 팔탄면 양감면 송산면 마도면 장안면 서신면
화성시을 선거구 (265,755)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화성시병 선거구 (178,620)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새솔동 기배동 화산동
화성시정 선거구(신설) (265,924)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병점1동 병점2동 진안동 반월동



행정구역도(출처 화성시청)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제안 국회의원 선거구

## 7. 광명시(광명갑 134,855 -666)

광명시는 도시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이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수는 287,603명(2023년 1월 말 기준) 광명갑 134,855명, 광명을 152,748명으로 광명갑이 하한인구수(135,521) 미달이다.

광명시갑 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광명시을 선거구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 《광명갑(134,855 -666) 조정 제안》

광명을 선거구 중 가장 인구가 적은 학온동(2,001)을 광명갑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학온동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하안4동(12,127)과 하안2동(13,488)을 광명갑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나 하안동이 분리되는 단점이 생긴다.

#### 제안 1) 학온동을 광명갑으로 조정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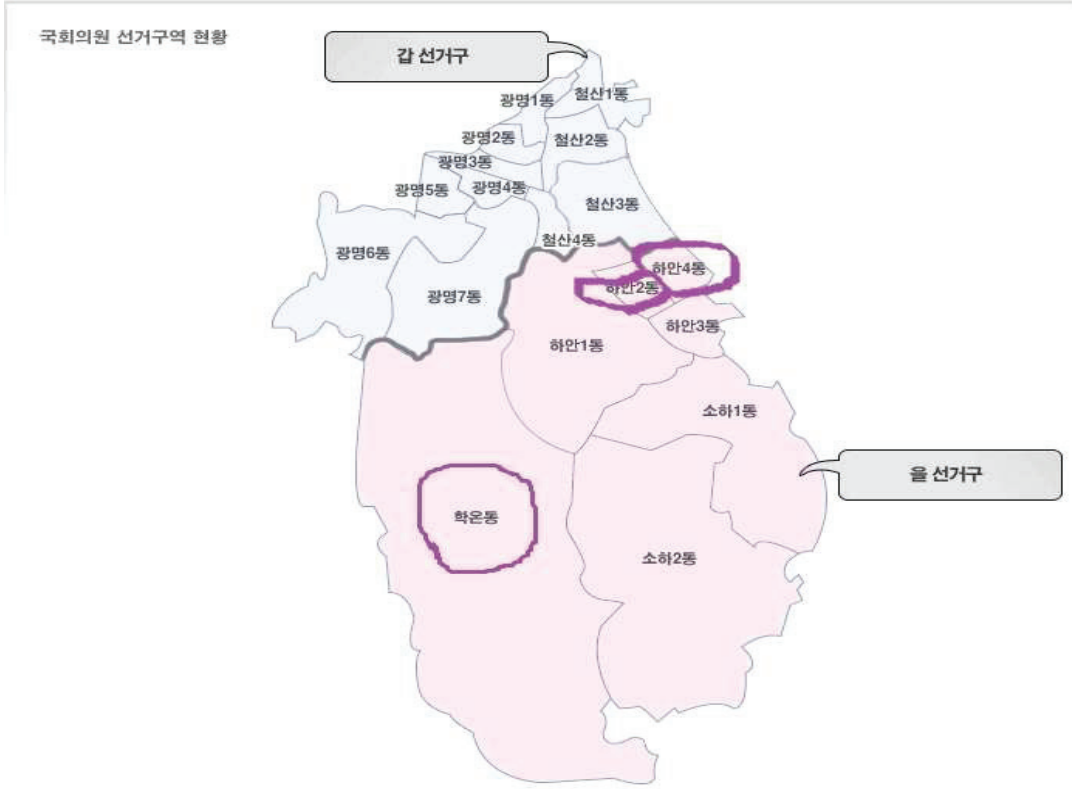
광명시갑 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b>학온동 (136,856)</b>
광명시을 선거구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150,747)

#### 제안 2) 하안4동을 광명갑으로 조정할 경우

광명시갑 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b>하안4동 (146,982)</b>
광명시을 선거구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140,621)

#### 제안 3) 하안2동을 광명갑으로 조정할 경우

광명시갑 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b>하안2동 (148,343)</b>
광명시을 선거구	하안1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139,260)



국회의원 선거구역 현황(출처 광명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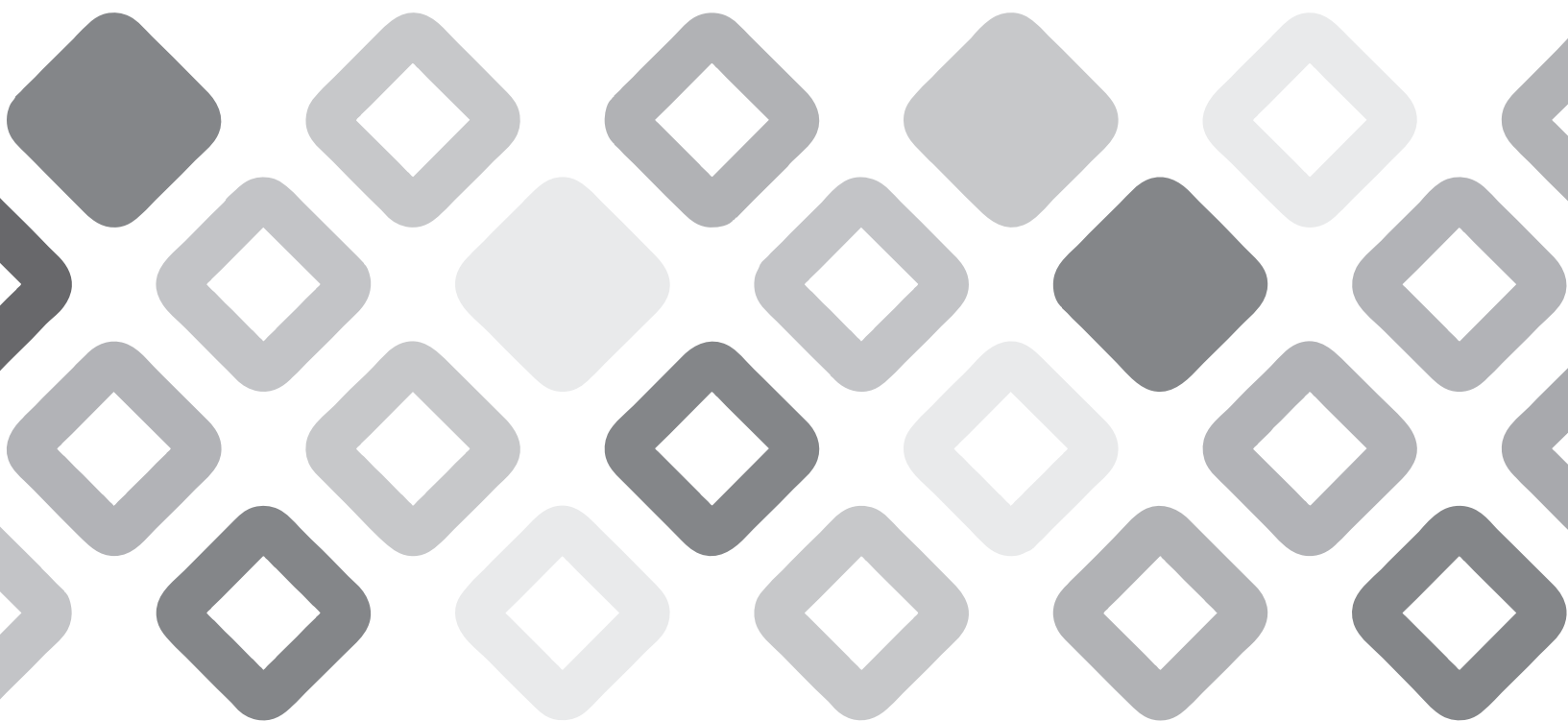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 끝 -





**박 승 하**

**진보당 경기도당 부사무처장**







## 경기도 선거구, 전국 253석으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획정은 가능한가

박승하 | 진보당 경기도당 부사무처장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300석 의석 규모의 조건 속에서 만족스러운 획정 결과를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켜 투표 가치의 균등한 반영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23년 현재 전국 각지에서 표출된 요구들로 비춰볼 때, 진보당에서만 의석·비례제 전면 확대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제도적 약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구비례의 산술적 배치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유권자 모두가 지닐 수 있는 큰 문제의식이 동반된다.

가장 근본적 문제는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및 도시 유권자들에게 표의 증가성을 만족시켜주며 동시에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및 농촌지역 거주민들에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선거구-한계의석이 야기하는 반복적인 제로섬(zero-sum) 현상으로 인해 지역 갈등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런 한계가 있었기에 지난 21대 선거구획정에서는 의석수 부족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읍·면·동을 분할해 선거구를 과도하게 나누는 괴이한 선거구획정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연속된 구획 흐름에서 원인부터 짚어볼 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9대 총선 직전 국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1항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명시를 '자치구·시·군의 일부'로 변경했다. 이때부터 '유권자 생활권 쪼개기 획정'이 시작되었다. 물론 제도적 한계가 끌어내는 현상이기에

기초의원 선거 구획에서 극심해지는 이익 주도형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분할되어 팔달구 선거구에 편입된 바 있다. 용인시에서도 경계를 넘나드는 기형적인 선거구획정이 이뤄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는 사실이다. 수원과 용인 같은 인구 밀집 지역들의 의석수는 기준에 맞지 않게 전혀 늘지 않았고, 영·호남 일부는 감소가 마땅했으나 오히려 줄지 않았다. 현행 부족한 의석수와 소선거구제에서의 선거구획정이 지닌 치명적인 결함이다.

제20대 총선 때는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그 반대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예시다. 당시 강원도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등 5개 시·군은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고, 그 면적이 자그마치 5,970km<sup>2</sup>다. 서울 10배의 면적에 국회의원 비율이 1명인 것이다. 이 경우는 사실 전면 비례제만이 해결책이다.

제21대 총선에서는 결국 선거구획정의 지역 분할 문제가 종합적으로 분출되었다. 4개 시·군의 ‘공통 선거구’가 강원 4, 충북 1, 전북 1, 전남 3, 경북 2, 경남 2개였다. 반면 1개 기초자치단체가 3~5개로 분구된 경우는 서울 노원구·강서구·강남구·송파구, 대구 달서구, 경기 수원시·성남시·부천시·안산시·고양시·남양주시·용인시·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등 17곳의 61개 선거구였다. 지난 총선에서 드디어 소선거구제에서의 획정 작업이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그간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인구 대표성 반영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기에 조정 의견은 필요하다. 경기도의 적정 가능 의석은 항상 60석을 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의석은 모든 총선에서 60석 이하였다. 특히 21대 당시 인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들 중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한 석 감소했다. 언급했던 생활권을 무시한 선거구 조정은 물론

지방의회에서 혼한 읍·면·동 분할 지역까지 나왔다. 따라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조정을 해야 하는 지역이 가장 많은 경기도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서 진보당의 제안은 아래 표와 같다. 의견이 없는 지역들도 도내에서의 상대적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지역과 비교시 이미 인구 기준을 훨씬 초과한 곳이 대부분이다. 흥미롭게도 경기도 내에서도 선거구 감소 의견 도시들이 있는데, 해당 지역의 기득권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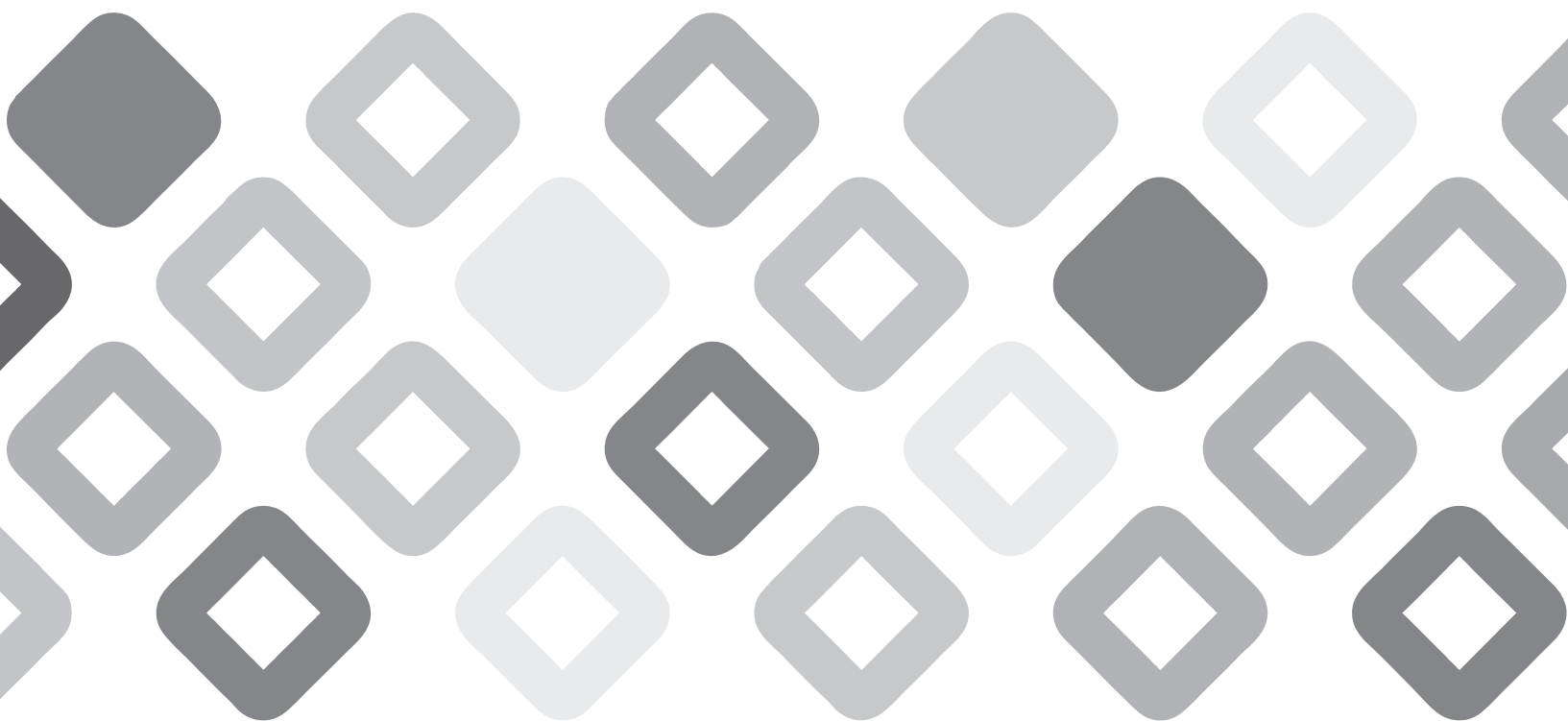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선거구	인구	선거구	의견
수원시	1,191,620명	5	울산 초과 인구, 광역비례제 시범 구역 검토 필요
화성시	914,500명	3	동탄권을 2선거구로, 총 4개 선거구로 개편
평택시	580,011명	2	3분할 기준 542,084명 초과, 갑/을 모두 상한선 초과 → 3개 선거구로 개편
안성시	183,587명	1	없음
안산시	640,679명	4	4분할 기준에서 17만 명 부족, 3개 선거구로 개편
시흥시	518,366명	2	없음
안양시	547,917명	4	3분할 기준 542,084명 충족, 3개 선거구로 개편
광명시	287,603명	2	없음
부천시	788,935명	4	없음
김포시	486,122명	2	없음
하남시	326,496명	1	21대 대비 5만 인구 증가, 2개 선거구로 개편
용인시	1,074,650명	4	현재 걱정 의석 5.29석, 5개 선거구로 개편
성남시	919,771명	4	없음
광주시	391,791명	2	없음
군포시	275,756명	1	없음
오산시	226,999명	1	없음
이천시	215,897명	1	없음
여주시· 양평군	227,901명	1	없음
의왕시· 과천시	222,678명	1	없음

지난 5월 KB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선거제도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의 전 조사에서 적정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하여 65%의 참가자들이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숙의 후에는 그 비율이 37%로 감소했다.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13%(숙의 전)에 33%(숙의 후)로 변화된 결과가 나왔다.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의 복잡한 구조와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비례제 확대 및 국회의원 정수 확대뿐이다. 특히 살펴본 대로 의원정수 증가는 구획 작업과 불가분인데, 보다 합리적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의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재차 의원정수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 유 병 옥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진술서

## -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

유병욱 |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

### 1. 들어가는 말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구획정 기한은 이미 지난 것으로 압니다.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정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줄속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소 늦더라도 최대한 심사숙고하여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선거구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그 절반 가까운 인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선거에서든 경기도의 표심은 선거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 남부는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에 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선거구획정 문제에서도 핵심 지역은 경기 남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진술서가 합리적이고 좋은 선거구획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 문제의식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준은 최대 인구수의 선거구와 최소 인구수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2: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기준이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표의 등가성을 맞춘다는 취지에 동의하고 본 진술서의 내용 역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술에 앞서 본 진술인의 문제의식을 간략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선거구획정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수치를 따져가며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서 진술 의견을 받은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언론 등을 통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2:1 원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선거구를 나누는 문제에 있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인구수를 계산하여 획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구수 편차를 2:1로 맞춘다는 기준이 다른 모든 가치들을 사실상 압도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상의 인구 분포란 말 그대로 통계적 자료에 불과합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 그리고 정치의 꽃인 선거의 선거구를 나누는 문제가 통계만으로 이뤄질 리 만무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둘러싼 제반과 환경을 두루 고려하는 고민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고민까지 담아내기에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자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조직하고 대표하는 정당의 역할이 없다시피한 열악한 정치 토대에서, 과연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선거를 통해 얼마만큼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선거구획정이 결국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사가 평등하게 대표되기 위함이며, 이는 결국 우리 정치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때, 단순히 수치의 조정만으로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차제에는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 의식을 반영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 3. 경기 남부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 1) 진술의 방향

본 진술인이 진술 범위는 경기 남부로, 21개 시군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수가 많고 인구 규모도 많기 때문에 모든 시군의 현황을 다 짚어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진술에서는, 진술 의뢰를 받은 시점에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포함하는 시군을 중심으로 진술을 하겠습니다.

#### 2)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경기 남부지역에서 획정 기준에 불부합하는 선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 초과>

수원시		평택시			
수원시무	280,243 (+9,201)	평택시갑	282,563 (+11,521)	평택시을	297,448 (+26,406)
화성시			하남시		
화성시을	351,194 (+80,152)	화성시병	302,178 (+31,136)	하남시	326,496 (+55,454)
용인시			시흥시		
용인시을	271,326 (+284)	용인시병	289,443 (+18,401)	시흥시갑	286,940 (+15,898)

##### <하한 미달>

광명시	
광명시갑	134,855 (△666)

위 시군의 전체 인구수를 선거구 평균인구수(\*전국인구를 선거구 수로 나눈 수)인 203,281명으로 나눈 선거구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선거구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도시에 지역구가 몇 개가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상한초과						하한미달
	수원시	평택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화성시	광명시
인구수	1,191,620	580,011	513,468	326,496	1,074,650	914,500	287,603
평균 선거구 수	5.9	2.9	2.5	1.6	5.3	4.5	1.4
현재 선거구 수	5	2	2	1	4	3	2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해당 시군은 현재의 선거구보다 더 많은 선거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선거구 개수와 평균 선거구 개수가 1 이상 차이나는 지역은 선거구 추가가 불가피한 지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위 불부합 선거구의 확정 문제는 선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 남부의 선거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 선거구를 통·폐합하여 줄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수가 더 늘어나고 비수도권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수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의원들의 지역구 편성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선거구획정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숙, 경제성장 등의 거시적 차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바, 당장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3) 개별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진술

#### ① 수원시 무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수원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왔고 특히 무 선거구의 경우는 각종 택지 개발사업 등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선거구 최대 허용 인구보다 약 1만여 명이 초과된 상황인데, 행정동을 일부 분리하여 다른 선거구에 결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시 다섯 개 선거구 중 수원시 병 선거구가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병 선거구와 닿아 있는 무 선거구 일부 지역을 편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원시는 유희부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 도시문제로 부각될 만큼 도시화와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이나 정체성의 측면에서 특별히 선거구의 재배치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② 평택시 갑, 평택시을

평택시 갑: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북동, 비전1동, 세교동

평택시 을: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

평택은 최근 경기 남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고덕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산업단지의 유치로 경제 성장도 눈에 띕니다.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위에서 보듯 이미 평균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가 한 개 더 증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거구를 신설하여 3개 선거구로 개편하고 선거구당 인구는 대략 19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편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덕신도시 유입 인구와 기존 평택 구시가지 중심의 인구는 성향이나 정체성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시흥시 갑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시흥시 갑 선거구는 배곧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장현지구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 선거구는

이미 상한 초과를 하였으니 조정이 필요합니다만, 선거구를 추가로 만들 상황은 아닙니다. 시흥시 을 선거구에 인접한 행정동을 조정하여 획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④ 하남시

하남시 일원

하남시는 4년 전에는 선거구 상한 초과에 거의 근접했는데 현재는 상한 초과 인구보다 5만 명이 넘게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사강변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하남시 갑, 하남시 을 선거구로 나누어 재편해야 합니다.

#### ⑤ 용인시 을, 용인시 병

용인시 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3동, 상하동

용인시 병: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성북동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 증가가 빠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용인시 을, 용인시 병 선거구는 용인시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용인시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여러 차례 추진된 지역이고 용인이 워낙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도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과 정 지역구는 아직 상한 초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머잖아 초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을과 병 선거구의 일부를 갑과 정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모든 선거구가 초과선에 근접합니다. 22대 선거 이후에는 선거구 신설이 유력한 상황이니만큼, 이번 선거구획정에서 미리 선거구를 신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⑥ 화성시 을, 화성시 병

화성시 을: 동탄1동, 동탄2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화성시 병: 봉담읍(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3동

화성시는 매우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탄1, 동탄2신도시라는 대규모 신도시를 품고 있고, 동탄신도시 서쪽으로 점점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화성시에 선거구 신설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동탄신도시 권역을 1신도시와 2신도시로 하여 선거구를 나누고 병점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그리고 기존 갑 선거구를 포함하여 4개 선거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머잖아 화성시 인구가 1백만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경우, 추가 선거구 신설도 고려해야 합니다.

## ⑦ 광명시 갑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광명시 갑 선거구는 광명시의 구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을 선거구의 경우 기존 아파트 단지들이 점차 재건축을 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지만, 갑 선거구의 구도심은 인구의 유출로 하한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을 선거구 인구 규모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구 인구 조정시 을 선거구도 하한선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갑 선거구의 하한선 미만 유출 인구수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니 조정을 통해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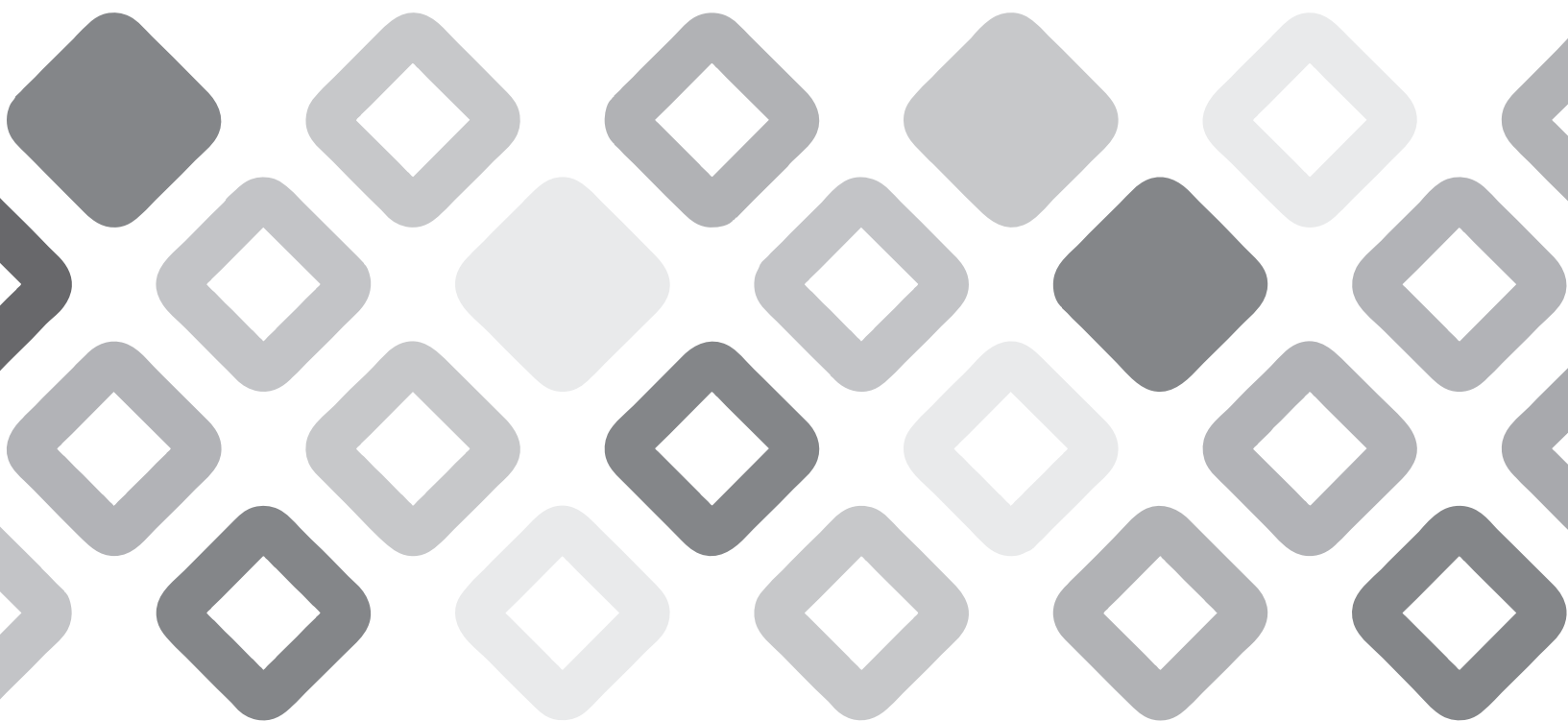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 4. 결 론

위 진술은 경기 남부의 획정 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본 진술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과정에서는 더 정교한 자료를 토대로 원만한 대안을 도출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22대 선거 이후에는 선거구획정에 있어 더 다양한 가치들을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이준호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







#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경기남부)

이준호 |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

## 1. 現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하고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모두 고려해 획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구인 만큼 인구를 중심으로 획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선거구제에서 1988년 소선거구제로 변경된 이후 영호남 농산어촌이 인구에 비해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1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3:1까지 허용했던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범위 내의 방법이 등장하며 선거구획정과 선거법을 개정해왔고 지난 국회에서는 정당 간 합의 없이 다수 정당이 소수 정당을 무시하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정당 간의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 잦은 선거구 변경 ▲ 게리멘더링 ▲ 공룡선거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 권역별 불균형 문제 △ 표의 등가성 훼손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의 목적인 평등선거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깜깜이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도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감소와 인구 수도권 집중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현 기준의 의석수를 인구기준으로 나누는 선거구 획정 방식은 더욱 풀기 힘든 난제가 되어 가고 있다.

## 2. 개선방향

앞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21대 총선 직전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초과의원 발생을 방지한다는 목적의 하나로 기형적인 준연동형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큰 우려대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위성정당의 출현 등으로 최악의 선거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과거 석·박사와 전문가가 부족하던 시대와 달리 현재는 지역구를 통해서도 직능·직군·소수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만큼 인구 감소·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병립형 비례대표로 환원하면서 지역 대표성과 직능 대표성을 겸비한 인물에 대한 등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방안 또는 비례대표를 지역비례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학적 선거구획정이 필요하다. 빅데이터와 AI의 기술 발전이 무서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R&D, 생산, 유통, 판매에 신기술을 적용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구획정은 과학의 영역보단 협상의 영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처리 같은 폭력에 가까운 일들도 발생하곤 한다.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데이터화 하고 이를 수학적 으로 공식화하여 장기적으로 더욱 과학적인 확정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인구를 엄격한 기준으로 획정을 하다보면 공룡선거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국가처럼 면적을 획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선거구획정 관련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에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법정기한이 지켜지는 것을 보는 것은 거의 어렵다. 인구범위 조정 역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선거구획정이 타임테이블에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느슨한 법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 3. 남부권 이슈

경기도의 선거인수는 약 1,140만으로 전국 26%의 유권자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남부지역은 약 840만으로 서울의 인구보다도 많다.

[20대 대통령선거 시도별 선거인수 및 국회의원 의석수]

지역	선거인수	비율	의석수	비율	차이
서울	8,336,646	18.90%	49	19.40%	0.50%
부산	2,920,041	6.60%	18	7.10%	0.50%
대구	2,045,801	4.60%	12	4.70%	0.10%
인천	2,518,329	5.70%	13	5.10%	-0.60%
광주	1,208,942	2.70%	8	3.20%	0.50%
대전	1,232,799	2.80%	7	2.80%	0.00%
울산	941,853	2.10%	6	2.40%	0.30%
세종	288,866	0.60%	2	0.80%	0.20%
경기	11,428,857	25.90%	59	23.30%	-2.60%
강원	1,333,280	3%	8	3.20%	0.20%
충북	1,364,649	3.10%	8	3.20%	0.10%
충남	1,795,932	4.10%	11	4.30%	0.20%
전북	1,532,640	3.50%	10	4.00%	0.50%

지역	선거인수	비율	의석수	비율	차이
전남	1,580,332	3.60%	10	4.00%	0.40%
경북	2,270,497	5.10%	13	5.10%	0.00%
경남	2,806,603	6.40%	16	6.30%	-0.10%
제주	562,461	1.30%	3	1.20%	-0.10%

위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도 지역은 인구 대비 의석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부동산 대란 이후 서울에서 경기도로 많은 인구가 전입을 하면서 최근 인구는 더욱 늘어난 상태이다. 심지어 지난 총선 때는 경기도가 1석이 줄어들면서 생활권이 무시된 선거구 조정과 읍면동 분할이 이루어졌다. 화성의 경우 어느 동이 어떤 지역구인지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실무자조차 구분이 어려울 정도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확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선거구획정 위원회 발표)을 보면 인구 상한초과 18개 지역 중 12곳(66.7%)이 경기도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인구 상한초과 지역 : 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고양시을, 고양시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파주시갑, 화성시을, 화성시병

평택시의 경우 현재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갖고 있으며 58만의 인구이다. 하남시의 경우도 32만 명을 돌파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동구남구갑, 동구남구을, 서구갑, 서구을 4개 지역 인구를 합치면 52만으로 평택시 인구보다 적지만 2배의 의석수를 갖고 있다. 동구남구을, 서구을의 인구를 합치면 25만 명으로 하남시 인구에 미치지 못하나 2배의 의석수를 갖고 있다.

광주의 경우 대전보다 인구수가 적고, 면적으로 보아도 광주가 501km<sup>2</sup>로 대전이 539km<sup>2</sup>로 대전이 크지만 의석수는 광주가 1석이 더 많은 비정상적 상태로 선거구 획정시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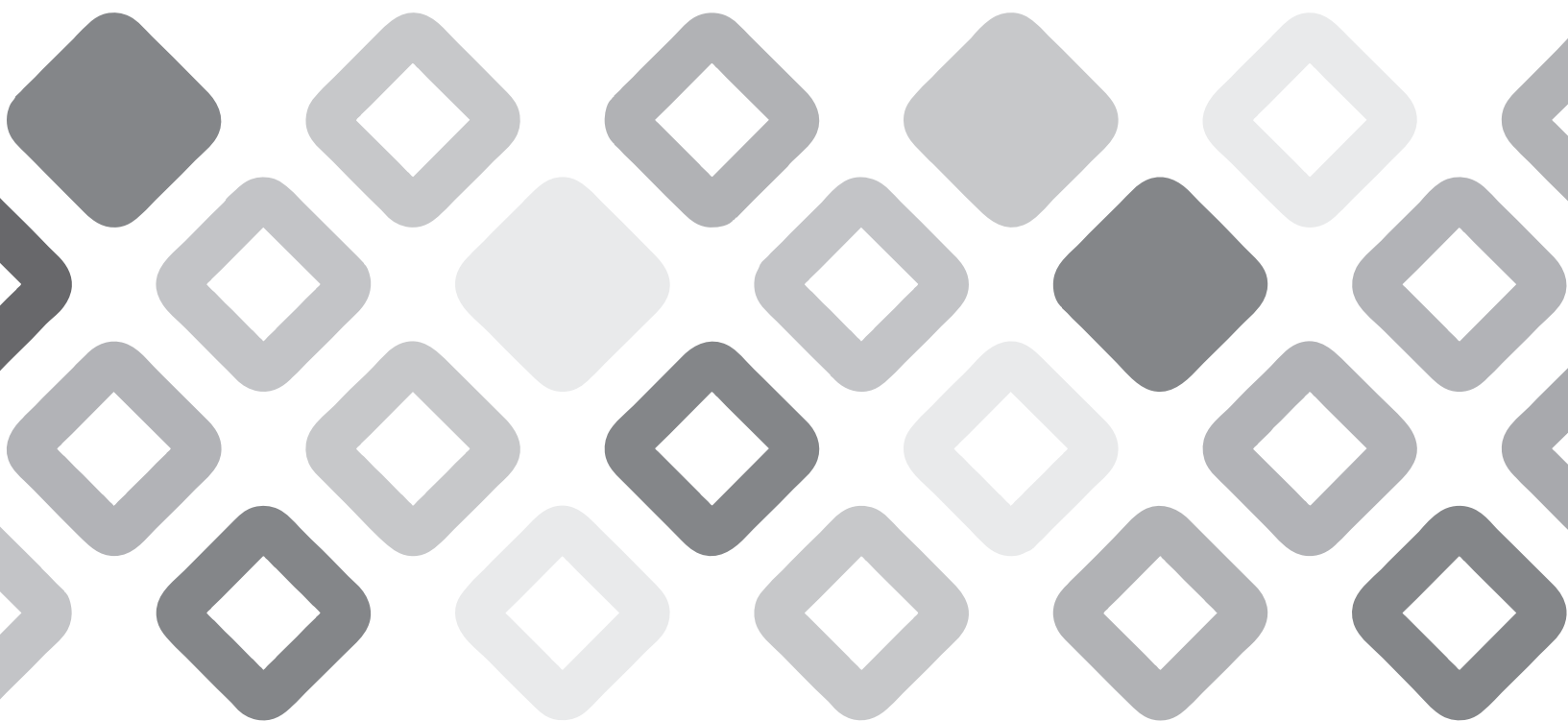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이처럼 경기도 특히 남부지역은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최대 피해지역이 되어 온 측면이 있다. 농어촌 소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반드시 인구기준을 따를 수 없다고 하면 특정 지역의 과대대표 현상, 과소대표 현상을 바로잡고 경기도의 인구상한 초과 지역 역시 타 대도시와 같은 기준으로 획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임 정 빈

성결대학교 교수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기도 남부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

임정빈 | 성결대학교 교수

## 1. 제22대 경기도 남부지역 국회의원선거구 관련 지역사회 이슈

경기도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31개(28시 3군)이고 21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59석)를 구성하고 생활권 등의 차이가 큰 만큼 지역을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경기도 남부지역 21개 시·군<sup>1)</sup>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적정 의석은 역대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60석을 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의석은 60석 이하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경우에도 인구비율에 따른 시도별 적정 의석수 및 기존의석수 현황을 보면 21대 총선의 인구기준일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090,648명으로 적정의석수는 64석이었으나 당초 획정위의 제시한 의석수는 60석으로 -4석의 과소대표가 나타났다.

〈표 1〉 21대 국회의원선거 인구비율에 따른 시·도별 적정 의석수 및 현행의석수

(2019. 1. 31. 기준)

시·도명	인구수	적정 의석수 (a)	현행 의석수 (b)	과다 대표수 (c=b-a)	시·도명	인구수	적정 의석수 (a)	현행 의석수 (b)	과다 대표수 (c=b-a)
계	51,826,287	253	253		경기	13,090,648 (25.26%)	64	60(59)*	-4(-5)
서울	9,766,288 (18.84%)	48	49	+1	강원	1,541,695 (2.97%)	8	8	-

1)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과천시

시·도명	인구수	적정 의석수 (a)	현행 의석수 (b)	과다 대표수 (c=b-a)	시·도명	인구수	적정 의석수 (a)	현행 의석수 (b)	과다 대표수 (c=b-a)
부산	3,438,259 (6.63%)	17	18	+1	충북	1,599,155 (3.09%)	8	8	-
대구	2,460,382 (4.75%)	12	12	-	충남	2,125,797 (4.10%)	10	11	+1
인천	2,955,916 (5.70%)	14	13	-1	전북	1,834,532 (3.54%)	9	10	+1
광주	1,459,832 (2.82%)	7	8	+1	전남	1,878,904 (3.63%)	9	10	+1
대전	1,488,725 (2.87%)	7	7	-	경북	2,674,005 (5.16%)	13	13	-
울산	1,154,786 (2.87%)	6	6	-	경남	3,373,214 (6.51%)	16	16	-
세종	316,814 (0.61%)	2	1(2)*	-1(0)	제주	667,337 (1.29%)	3	3	-

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020.

더욱이 21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들 중에서 인구가 가장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획정위가 결정한 보고서가 국회 행안위의 재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하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경기도 화성시 병의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하여 화성시 갑의 선거구에 속하게 하여 분구를 억제한 특례 선거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시도별 의석수는 20대 60석에서 21대는 59석으로 오히려 1석 감소한 정수를 결정하는 등 생활권을 무시한 선거구 조정 등으로 선거구획정에 대한 경기도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많은 편이다.

제21대의 경우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획정기준과 비교하여 인구기준이 상향되고 시·도별 의석수가 조정되면서 선거구획정안에도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세종시 정수 증가로 인한 선거구 감소 시·도가 서울에서 경기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노원구는 기존대로 3개 선거구를 유지하게 되었고, 경기 군포시는 갑·을 선거구가 통합되어 단독선거구가 되었다(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백서, 2020: 94).

시·도별 의석수 역시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른 적정 의석수 배정,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존중하기 위한 의석수 가감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할당과는

거리가 있었다. 세종의 의석 증가분을 과다 대표된 서울에서 조정한 획정 위원회의 당초안과는 달리, 4석이나 과소 대표된 경기의 의석을 추가 감소 시킨 국회의 획정기준은 경기도의 인구대표성을 더욱 약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백서, 2020: 110).

제22대 선거 기준일인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경기도의 인구는 13,596,091명으로 인구 대비 적정한 22대 국회의원 의석수는 21대(현재) 보다 8석 늘어난 67석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sup>2)</sup>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지역선거구의 경우 경기도가 상한선 초과부터 하한선 미달까지 가장 많아 경기도 전체가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적정 가능한 의석(67석)을 기준으로 최대 8석까지 증설이 가능하나, 경기도가 기준에 따라 모두 증설 하게 되면 비수도권, 특히 지역구 1석이 절실한 농산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인구대표성과 함께 지역대표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적정 가능한 선거구수(67석)보다 축소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경기도의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이러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불부합 경기도 남부 지역 선거구

전국적으로 획정기준 불부합 지역선거수의 경우 인구범위 상한 초과지역이 전국 18곳 중 경기도 남부지역의 경우 9개 선거구(경기도 전체 12선거구)이고 하한 미달지역 11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경기도 2개 선거구)이다.

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의해서도 '시·도별 적정 의석 대비 의원 정수 비교' 결과, 경기도는 22대 가능 의석이 66.88석(67석)으로 산출되었음. 이는 헤어-니마이어 방식, 즉 의원 정수를 각 시·도의 인구비율로 나눠 정수부분 우선 배정 후, 잔여의석을 소수 부분 최대 순으로 배분(산술비례)한 결과임.

〈표 2〉 획정기준 불부합 경기도 남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세부내역

구 분	선거구	인구수 (편차)	비고
상한초과	수원시 무	280,243 (+9201)	(인구수) 수원시 1,191,620명(갑·을·병·정·무)
	평택시 갑	282,563 (+11,521)	(인구수) 평택시 580,011명(갑·을)
	평택시 을	297,448 (+26406)	
	시흥시 갑	286,940 (+15,898)	(인구수) 513,468명(갑·을)
	하남시	326,496 (+55,454)	(인구수) 326,496명
	용인시 을	271,326 (+284)	(인구수) 1,074,650명(갑·을·병·정)
	용인시 병	289,443 (+18,401)	
	화성시 을	351,194 (+80,152)	(인구수) 914,500명(갑·을·병)
	화성시 병	302,178 (+31,136)	
하한 미달	광명시 갑	134,855 (△666)	(인구수) 광명시 287,603명(갑·을)

###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례선거구 현황(경기도 남부지역)

특례선거구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선거구획정 기준인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금지 기준에서 벗어난 예외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020년 3월 3일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경기도의 경우 당초 화성시 갑·을·병에서 갑·을·병·정 4곳으로 분구하고 안산시 상록구갑, 상록구을, 단원구갑, 단원구을 4곳을 안산시 갑·을·병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 2020: 95). 경기도는 지역구 정수 결정 과정에서 화성시의 경우 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봉담읍과 향남읍에 인구가 집중되어 읍·면·동을 분할하지 않고는 기존의

3개 선거구로 획정이 불가능하였다.<sup>3)</sup> 이렇게 되면서 봉담읍이 분할되어 선거구가 나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표 3〉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특례선거구 현황(경기도 남부)

선거구	인구수(편차)	비고
화성시 갑	261,128	(인구수) 화성시 914,500명(갑·을·병)
화성시 병	302,178 (+31,136)	※ 화성시갑 봉담읍(분전리 외) 6,491명 ※ 화성시병 봉담읍(상리 외) 81,592명

#### 4. 획정기준 불부합한 경기도 선거구 조정 제안

##### 1) 수원시 무 선거구

수원시 선거구는 갑, 을, 병, 정, 무로 5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 무 선거구의 인구는 2021년 1월 31일 기준 280,243명으로 국회의원선거구 인구 상한을 9,201명 초과하였다.

〈표 4〉 제21대 수원시 국회의원선거구 구역표

수원시 갑 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과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수원시 을 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수원시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시 병 선거구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원시 정 선거구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고1동, 광고2동
수원시 무 선거구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3) 당초 획정위원회는 화성시를 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조정하고, 화성시의 선거구 증가분은 안산시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안산시의 인구는 상한 인구기준의 3배수를 넘지 않지만 4개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어 선거구 감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안산시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기준일 현재 이미 화성시의 인구가 안산시를 앞질렀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었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 2020: 28). 그러나 국회 행안위가 21대 선거구획정위에 재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화성시 봉담읍이 특례선거구 되었음.

수원시는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특례시로 팔달구(병 선거구)를 제외한 일반구 3곳을 나누어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어 선거구를 더 증설하려는 요구가 있다. 그러나 병 선거구와 무 선거구의 인구격차는 87,278명이나 격차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뿐만 아니라 수원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무 선거구의 일부 동을 병 선거구로 이전하는 경계조정 수준에서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5〉 수원시 전체 인구 및 선거구별 인구

구분	수원시						
	전체 인구	갑	을	병	정	무	편차
21대총선거준일 (2019. 1. 31.)	1,200,038	241,000	259,672	180,297	243,008	<b>276,056</b>	95,759
22대총선거준일 (2023. 1. 31.)	1,191,620	228,790	250,101	192,965	239,521	<b>280,243</b>	87,278

## 2) 평택시 선거구

평택시 선거구는 갑·을 두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을선거구의 인구 상한 초과로 비전 1동을 갑선거구로 이동하여 선거구를 구성하였다.

〈표 6〉 제21대 평택시 국회의원선거구 구역표

평택시 갑 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비전1동, 세교동
평택시 을 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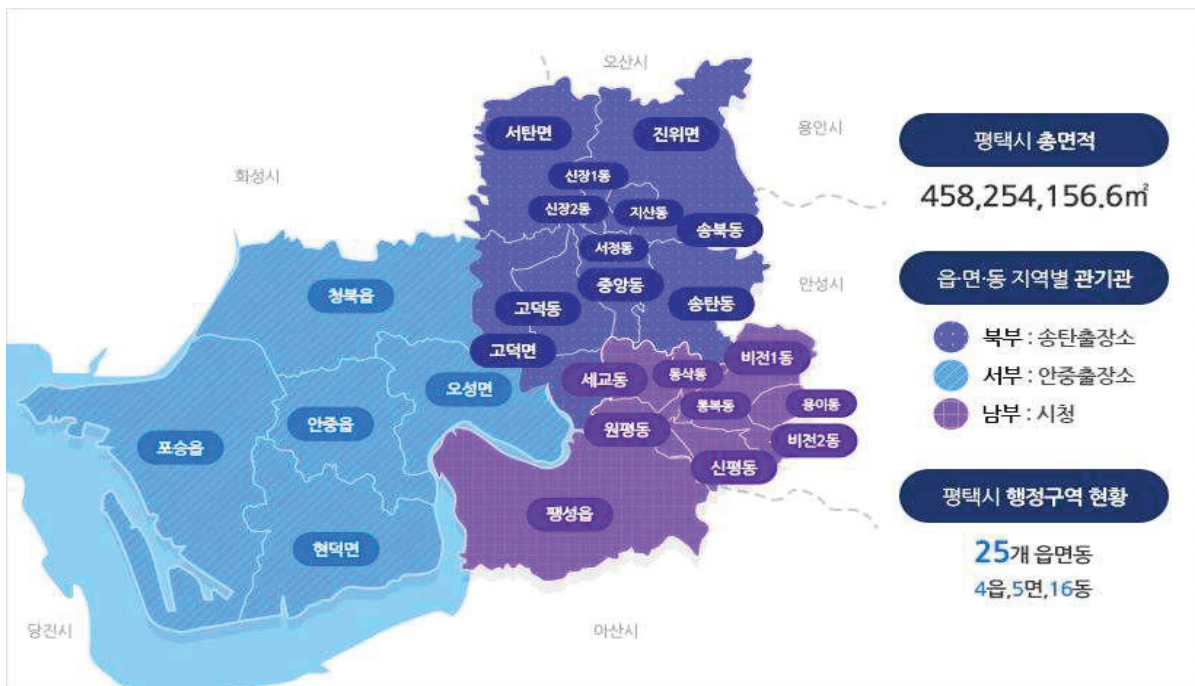
평택시 선거구의 경우 갑·을 선거구 모두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선거구 증설이 필요하다. 3개 선거구로 나눌 경우 선거구당 193,370명으로 선거구 상한인구보다 77,672명이 적고, 하한 인구보다 57,849명 많다.

<표 7> 평택시 전체 인구 및 선거구별 인구

구분	평택시		
	시 전체 인구	갑	을
21대 총선 기준일 (2019. 1. 31.)	496,324명	248,682명	247,642명
22대 총선 기준일 (2023. 1. 31.)	580,011명	282,563명	297,448명

현재 평택시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역별로 평택시의 중심지권과 송탄권, 안중권을 중심으로 갑·을·병 3개의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평택시 행정구역



### 3) 시흥시 갑선거구

시흥시는 갑·을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배곧신도시, 은계지구, 장현지구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갑선거구는 인구상한선을 넘어섰고 두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8〉 제21대 시흥시 국회의원선거구 구역표

시 흥 시 갑 선 거 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시 흥 시 을 선 거 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동

선거구를 신설하기에는 인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표 9〉 시흥시 전체 인구 및 선거구별 인구

구 분	시흥시			
	시 전체 인구	갑	을	편차
21대 총선 기준일 (2019. 1. 31.)	451,182명	232,907명	218,275명	14,632명
22대 총선 기준일 (2023. 1. 31.)	513,468명	286,940명	226,528명	60,412명

#### 4) 하남시

하남시 선거구는 하남시 전체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등 14개 동이다. 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가 2023년 현재 326,496명으로 인구 상한을 55,454명 초과하여 선거구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다.

〈표 10〉 하남시 전체 인구 및 선거구별 인구

구분	시 전체 인구
21대 총선 기준일 (2019. 1. 31.)	256,611명
22대 총선 기준일 (2023. 1. 31.)	326,4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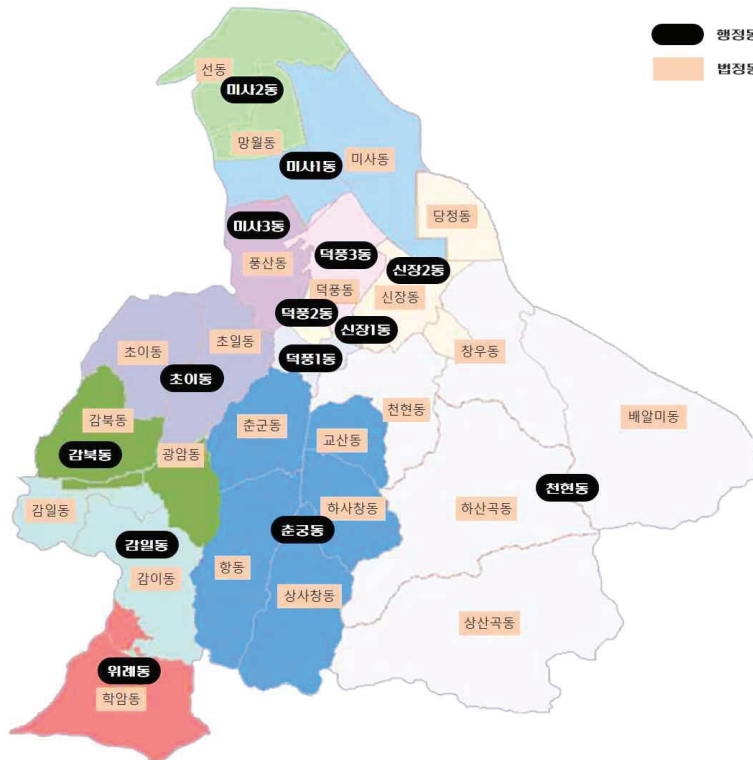
하남시의 경우 갑·을 선거구로의 분구 필요한데 인구와 면적을 고려했을 때 분구의 참고기준으로 현재 하남시 지방의원(도의원·시의원 선거구 일치)



선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남시 지방의원 선거구의 경우 도의원 (1,2,3), 시의원(가, 나, 다)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 선거구는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이 속해 있으며, 나선거구는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미사3동 다 선거구는 미사1동, 미사2동이다.

하남시 갑선거구를 시의원 선거구 가선거구로, 하남시 을선거구를 시의원 나선거구와 다선거구를 통합하여 분구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분구하였을 경우 갑선거구의 경우 2023년 1월 31일 현재 인구 167,031명이며, 나선거구와 다선거구를 통합할 경우 인구는 159,465명이다.

<그림 2> 하남시 행정구역



### 5) 용인시 을·병 선거구

용인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표 11> 제21대 용인시 국회의원선거구 구역표

용인시 갑 선거구	용인시 처인구 일원
용인시 을 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3동, 상하동
용인시 병 선거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성북동
용인시 정 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상현2동

용인시 을선거구의 경우 22대 총선일 기준으로 인구가 271,326명으로 상한 초과가 281명이고 용인시 병선거구의 경우 289,443명으로 18,401명이 초과되고 있으나 선거구를 증설할 수 있을 만큼의 인구수 증가 수준은 미치지 못하므로 현재의 갑·을·병·정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12> 용인시 전체 인구 및 선거구별 인구

구분	용인시				
	시 전체 인구	갑	을	병	정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일 (2020. 3. 24.)	1,064,633명	254,059명	269,768명	280,697명	260,109명
22대 총선 기준일 (2023. 1. 31.)	1,074,650명	258,883명	271,326명	289,443명	254,998명

## 6) 화성시

화성시의 경우 20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갑·을·병·정 4개 선거구로 증설하려고 고려했을 만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2023년 1월 31일 현재 인구가 914,500명으로 선거구를 갑·을·병·정으로 분구하여 4개 선거구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13> 제21대 화성시 국회의원선거구 구역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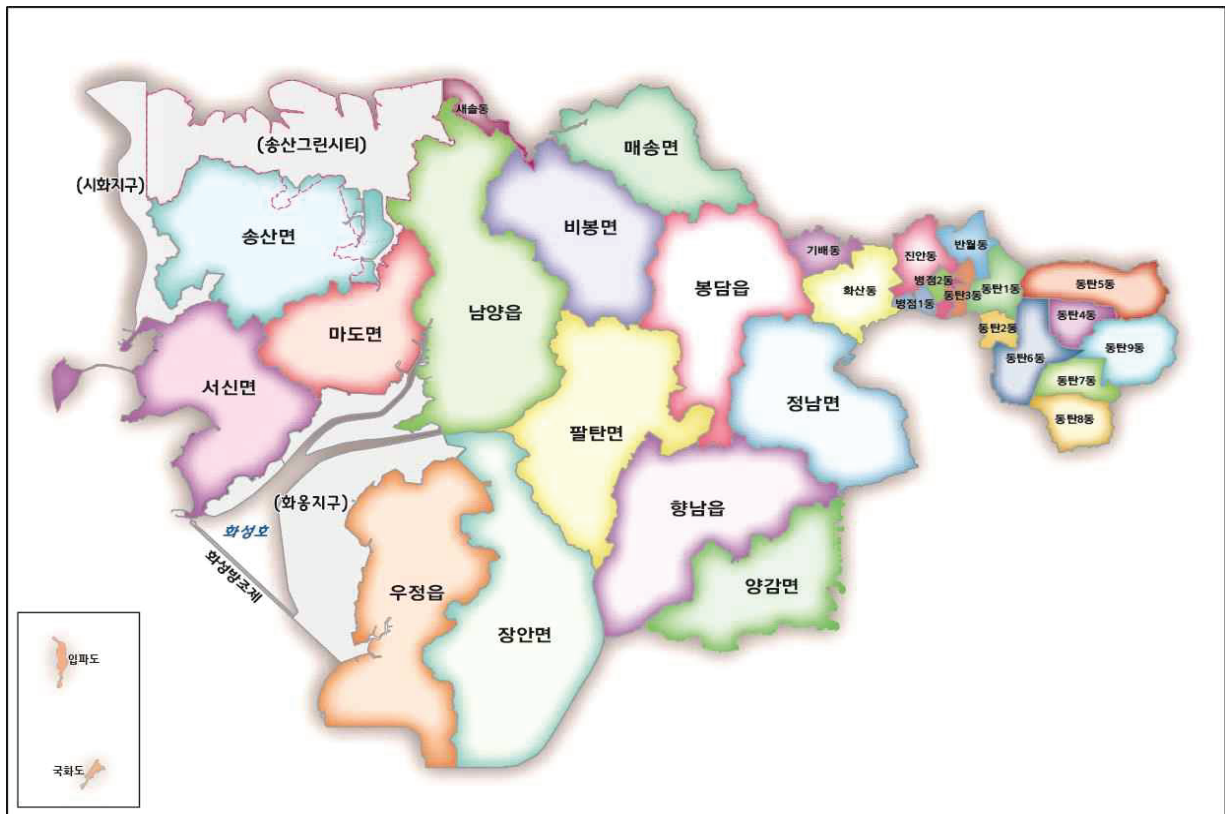
화성시 갑 선거구	봉담읍(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동리, 상기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화성시 을 선거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화성시 병 선거구	봉담읍(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3동

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화성시를 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선거구 변화 최소화 원칙을 내세운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의 합의에 따라 화성시 봉담읍이 분할되면서 특례선거구 되었다.

<표 14> 화성시 전체 인구 및 선거구별 인구

구 분	화성시			
	시 전체 인구	갑	을	병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일 (2020. 3. 24.)	825,255명	239,206명	306,909명	279,140명
22대 총선 기준일 (2023. 1. 31.)	914,500명	261,128명	350,194명	302,178명

<그림 3> 화성시 행정구역



화성시의 경우 봉담읍을 중심으로 갑선거구, 향남읍을 중심으로 을선거구, 동탄신도시 지역과 인근 지역을 2개 선거구로 분할하여 병선거구, 정선거구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표 15> 화성시 행정구역별 인구수 현황

(2023.1.31. 기준)

화성시 총계		914,500	
봉담읍	88,083	진안동	45,689
우정읍	17,578	병점1동	36,833
향남읍	86,891	병점2동	23,383
남양읍	50,321	반월동	33,206
매송면	6,822	기배동	16,267
비봉면	6,970	화산동	23,834
마도면	6,971	동탄1동	50,714
송산면	10,981	동탄2동	34,725
서신면	7,213	동탄3동	41,374
팔탄면	10,011	동탄4동	53,035
장안면	10,215	동탄5동	46,274
양감면	4,020	동탄6동	41,593
정남면	11,294	동탄7동	91,525
새솔동	25,350	동탄8동	33,328

### 7) 광명시 갑 선거구

광명시는 개발계획에 따라 소하동과 일직동 일대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광명동, 철산동 등 기존의 원도심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갑 선거구의 경우 134,855명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하한인구 미달이 666명으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표 16> 제21대 광명시 국회의원선거구 구역표

광명시 갑 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광명시 을 선거구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학온동

광명시의 경우 경계조정을 통한 갑·을 선거구 유지가 필요하나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과 인구수 고려를 통한 경계조정에 있어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표 17> 광명시 전체 인구 및 선거구별 인구

구분	광명시		
	시 전체 인구	갑	을
21대 총선 선거인명부작성일 (2020.3.24.)	315,986명	156,362명	159,624명
22대 총선 기준일 (2023.1.31.)	287,603명	134,855명	152,748명

예상되는 경계조정 구역은 하안4동이나 학운동이다.

<표 18> 광명시 갑·을 선거구 인구수 현황

(2023. 1. 31. 기준)

총계		287,603	
광명시 갑선거구	134,855	광명시 을선거구	152,748
광명1동	61	하안1동	25,503
광명2동	2,957	하안2동	13,488
광명3동	9,748	하안3동	19,416
광명4동	11,568	하안4동	12,127
광명5동	12,042	소하1동	30,808
광명6동	13,157	소하2동	27,631
광명7동	20,601	일직동	21,774
철산1동	10,668	학운동	2,001
철산2동	5,607		
철산3동	37,340		
철산4동	11,106		

## 5. 결 론

경기도와 경기도 남부지역의 경우 제20대, 제21대 모두 지역대표성은 과소 대표 되었다. 제20대에서는 2석, 제21대 선거에서 5석이 과소 대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20대의 경우 부산, 광주, 충남, 전북, 전남이 과대 대표 되었고, 제21대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북, 전남이 과대 대표 되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구획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원정수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간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먼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율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2023년 1월 기준(선거구획정인구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체인구의 50.5%고 현행 수도권 지역구는 121곳으로 전체지역구 253곳의 47.8%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선거구 인구 상한선 초과부터 하한선 미달까지 가장 많아 경기도 전체가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불부합 경기도 남부지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거구 조정안을 바탕으로 제22대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은 3개 선거구의 분구를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점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지역특성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간의 지역적 차이, 국가균형발전, 지역적 대표성 등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 단서에서 인구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에게 최소 1명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보장하고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또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조화문제, 행정구역의 과도한 분할과 게리멘더링 논란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해결하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수도권인구집중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경기도의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이러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상설화와 함께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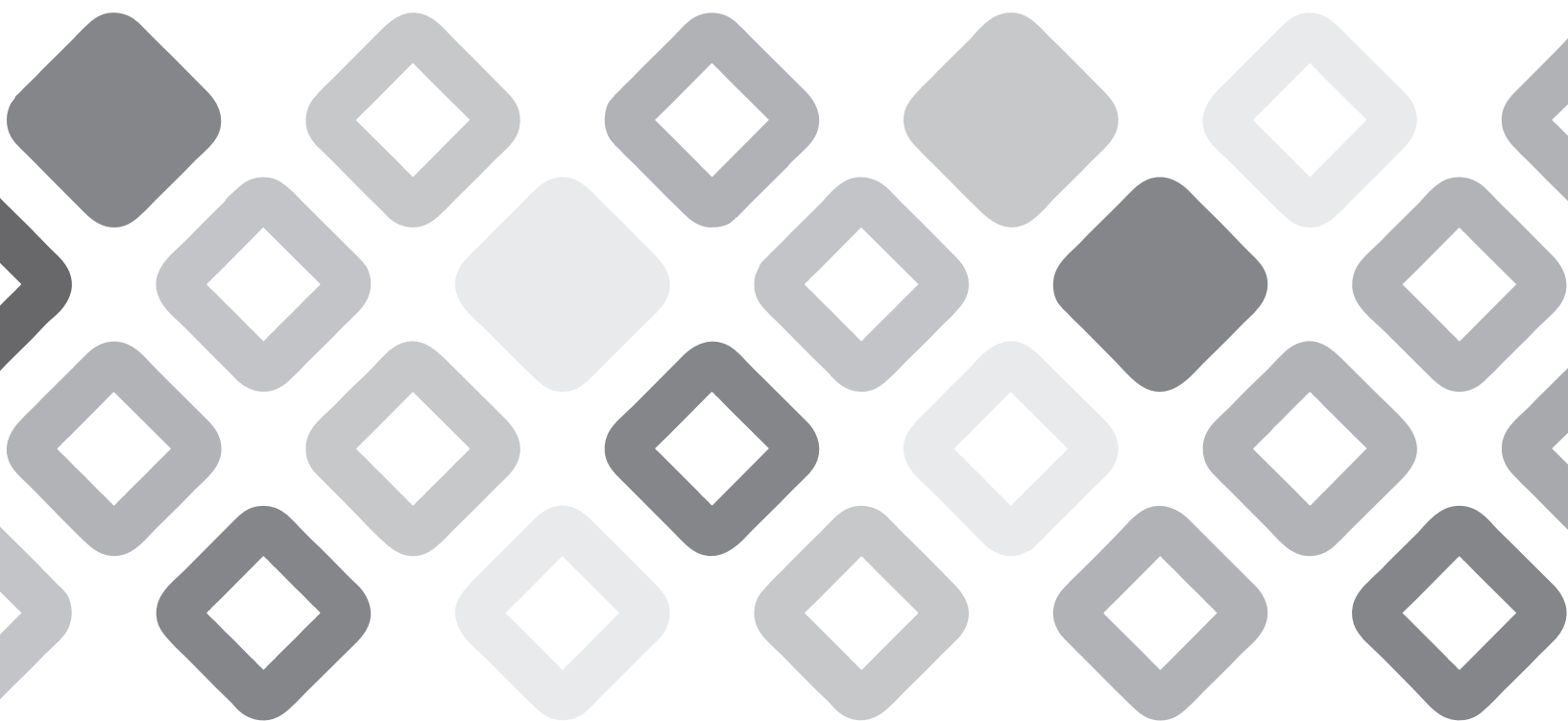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 전 애 리

경기프론티어문화예술단 회장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의견

전애리 | 경기프론티어 문화예술단 회장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일꾼들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매우 불합리하게도 과거 어느 때보다 수도권에서 더 많은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자리입니다.

이번 제22대 선거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수도권에는 여전히 인구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선거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적어도 8곳 이상에서 국회의원을 더 뽑아야 합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지역 전체의 사정을 다 알아보는 것 어려워 경기 남부의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들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화성을 예로 들어보면, 화성의 인구수는 지난 십 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4년에는 인구 100만을 넘는 특례시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상·하한 인구는 139,000명~278,000명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구수만 본다면 화성의 적정 국회의원 수는 최소 4명이 됩니다.

2022년, 화성의 선출직 국회의원은 3명이지만, 오는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인구 100만이 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선거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늘어난 인구수에 비례해 어떤 방법으로 지역을 나누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선거 구역을 나누는 문제는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거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거 구역을 정하는 문제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유불리가 적용되는 피선거권자 즉 출마자들에게는 선거구획정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선거 구획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1. 선거 관계자 ‘선거 구획 확정 업무’ 완전 배제

그래서 가장 먼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 출마자나 피선거권자들은 선거 구획의 업무에서 일절 배제하는 것이 선거 구획을 정하는 제일 기본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와 관련 있는 사람이 선거 구획에 개입하게 된다면 선거 구획 자체가 당리당략이나 당락에 영향을 받아 현실성이 없는 선이 그어지거나 행정구역이 나누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들이 선거 구획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 2. 되도록 한 행정구역 안에서 선거 구획을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제 생활권역을 나누어 정함.

적정 선거 인구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다른 지역과 선거지역을 병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여러 행정구역을 병합해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행정구역을 잘 보면 선거 구역 중, ‘주’가 되는 지역이 있고 또 ‘부’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가 되는 지역은 선거를 위해 병합된 여러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인구수가 집중되는 지역일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주가 되는 지역에 병합되는 지역 중, 주가 되는 지역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지역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에 포함되는 여러 병합지역 중에 경제생활 권역과 지역문화가 완전히 다른 지역이 포함되면 그 지역의 주권은 사실상 무시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이는 민주주의의 대표성 상실입니다.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지역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선거는 올바른 선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 3. 선거인단 숫자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을 병합시킬 때 일부 지역만 분할 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특정 행정구역을 반으로 나누어 어느 지역은 ‘갑’ 선거구에 배치하고 또 나머지 지역을 ‘을’ 또는 ‘병’ 선거구에 배치하는 선거 구획은 지역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선거로 인해 지역의 통합과 발전이 손해 보는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비슷한 위치에 소재하면서도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서 행정구역상의 소재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거 구획 결정으로 한 개의 행정동이 두 개의 선거 구역으로 나뉘게 되면 선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에서 당선된 국회의원과 ‘을’ 또는 ‘병’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성향과 당의 정체성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그들에 의해 행정구역에 투사되는 정책들이 충돌하고 혼선을 빚게 되면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경우, 피선거권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 때문에 한 개의 행정구역을 둘로 나누어 선거 구역을 정하는 행위는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 4. 부득이하게 행정구역을 넘어서 선거 구역을 정할 때는 주민들의 실 경제 생활 권역에 맞게 선거 구역을 정해야 합니다.

경기 남부의 어느 지역에서는 행정구역상 00시에 속해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생활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행정구역상 속해있는 시군의 행정지도를 받고는 있지만 장보기에서 아이 돌봄에 이르기 까지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하는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로 인해 지역이 개편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행정구역상 속해 있는 지역의 선거보다 주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의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며 실질 영향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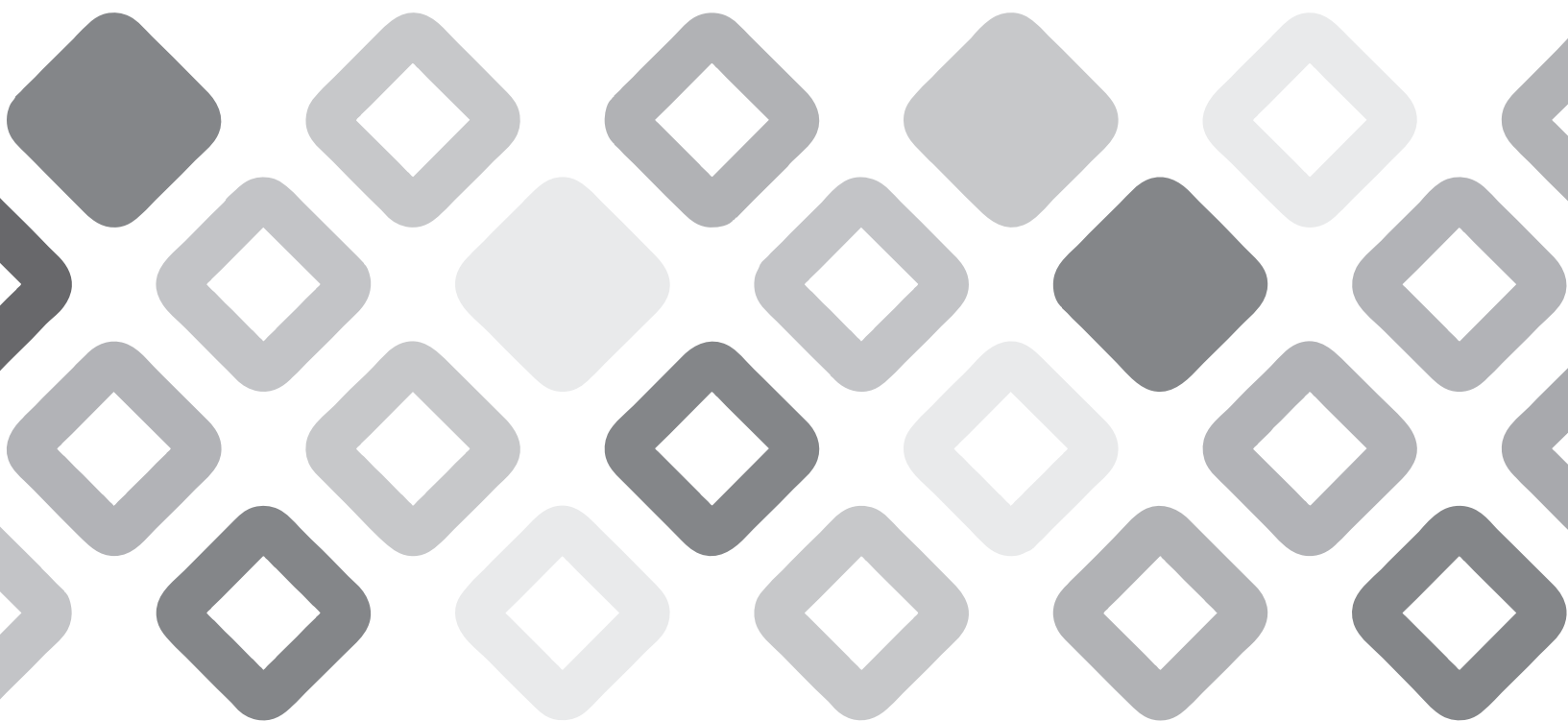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이런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행정구역의 개편을 도모 하던 선거 구획을 조정하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는 주민들의 의사가 정치 또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제적으로 선거 구역을 정하는 행위는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특정인에게 유불리가 적용되지 않는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사는 지역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 윤 민**

**정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정의당 경기도당 의견

조운민 | 정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 1. 들어가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1등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모든 표는 사표(死票)가 되는 상황임. 즉,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으나 선거에 반영되지 않고 표가 버려지게 됨.
- 이는 고스란히 원내 제1당과 2당이 모든 의석을 독식하여 정치의 다양성은 실종되고, 양당 중심의 대결과 혐오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옴.
- 실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원내 제1당이 50%를 넘긴 정도였지만 실제 의석은 80%를 넘게 가져간 상황임. 즉, 정당 지지율과 비례하지 않는 의석 배분이 나타난 것임.
- 이러한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표, 정당 득표율과 의석 간의 불비례성 등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었으며 충분히 예상된 결과임. 20대 국회가 선거제도를 개혁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21대 총선 결과가 증명하듯 민심을 왜곡하는 불비례성은 오히려 커짐.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제안함.

## 2. 경기 남부 현황

###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경기 남부)

- 2023년 1월 기준으로 평균인구수는 203,281명이고, 이에 따른 하한 인구수는 135,521명, 상한 인구수는 270,042명 임.
- 이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경기남부는, 광명시갑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상황이고, 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화성시을, 화성시병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상황임.

경기도(지역구 : 59)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울천동, 수원시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원시정선거구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고1동, 광고2동
수원시무선거구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성남시수정구선거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중원구선거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
안양시만안구선거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안양시동안구갑선거구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양시동안구을선거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부천시갑선거구	심곡동, 부천동
부천시을선거구	중동, 신중동, 상동
부천시병선거구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부천시정선거구	성곡동, 오정동

경기도(지역구 : 59)	
광명시 갑 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광명시 을 선거구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은동
평택시 갑 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북동, 비전1동, 세교동
평택시 을 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
안산시 상록구 갑 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 상록구 을 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 단원구 갑 선거구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안산시 단원구 을 선거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의왕시과천시선거구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오산시 선거구	오산시 일원
시흥시 갑 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시흥시 을 선거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동
군포시 선거구	군포시 일원
하남시 선거구	하남시 일원
용인시 갑 선거구	용인시 처인구 일원
용인시 을 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3동, 상하동
용인시 병 선거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성북동
용인시 정 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상현2동
이천시 선거구	이천시 일원
안성시 선거구	안성시 일원
김포시 갑 선거구	고촌읍, 김포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김포시 을 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경기도(지역구 : 59)	
화 성 시 갑 선 거 구	봉담읍(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등리, 상기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화 성 시 을 선 거 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화 성 시 병 선 거 구	봉담읍(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3동
광 주 시 갑 선 거 구	퇴촌면, 남중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광 주 시 을 선 거 구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여주시 일원, 양평군 일원

### 3. 선거구 조정의 원칙

- 선거구 조정 폭 최소화 - 기존 선거구의 변화 폭이 클 경우, 유권자들은 공약추진의 연속성·의정활동 평가 등의 기회를 박탈당함. 지방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선거 2년이 채 안 되어 내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은 다른 선거구 지방의원이 되고, 다른 지역 유권자들이 뽑은 지방의원이 우리 동네 지방의원이 되는 불합리한 일이 되풀이되었음.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정의 폭을 최소화해야 함.
- 생활권과 선거구 보합 - 선거구 조정 시 동일 생활권역이 동일 선거구역이 되도록 확정해야 함.
- 조속한 선거구 확정 - 이미 법정 확정기간은 경과하고 말았지만, 선거를 불과 1개월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회의 선거법 개정이 지연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국회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는 정당의 게리멘더링 시도에 흔들림 없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거구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주요 쟁점 지역

- 수원시 : 수원시의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많지만,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적합. 수원시 무가 2023년 1월 말 기준 28만 명을 기록하고 있어 다른 몇 개의 동을 다른 지역으로 넘기는 미세 조정 필요
- 화성시 : 화성시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고, 현재도 개발 중인 동탄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남양, 봉담, 향남 등 전 지역에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있기에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상황으로 총선 선거구 추가가 불가피
- 평택시 :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비전, 용이, 동삭, 지제지역의 개발로 인해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21대 국회의원선거구인 갑, 을 모두 인구상한을 초과하였기에 총선 선거구 1개 추가가 불가피
- 시흥시 : 시흥시는 배곧신도시를 비롯해 은계지구, 장현지구의 개발이 진행되며 인구가 늘었으나, 갑, 을 선거구 조정을 통해 현행 유지하는 게 바람직함.
- 안산시 : 안산시는 4분할이 반드시 보장되는 인구수에 17만 명 정도 적고, 경기도 내 다른 지역보다 인구 대비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으로 선거구를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줄이는 고민이 필요
- 광명시 : 광명시는 법률상 적어도 하나의 선거구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경계조정을 통해 갑/을 유지가 타당함.
- 하남시 : 하남시는 21대 총선 후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입주가 시작되며 인구가 급상승해 선거구 상한선을 넘어섰고, 교산신도시 개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갑/을로 나눠서 분구가 바람직

- 용인시 : 용인시는 지역 내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며,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5분할을 해야하는 108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기에 현재 선거구를 유지하는 게 타당해 보임, 단 더 적은 인구에도 5석을 보장받은 창원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결론 :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의 선거구 신설 불가피